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027~2029)

2026. 11.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배경 ····· 1

Ⅱ. 정책 여건 및 현황 ····· 3

Ⅲ.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성과 및 평가 ···· 12

Ⅳ.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추진방향 ···· 22

Ⅴ. 주요 추진과제 ····· 25

Ⅵ. 추진체계 ····· 55

Ⅶ. 향후 추진계획 ····· 57

Ⅰ 추진 배경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00.10월 제도 시행** 이후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서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과 빈곤 완화에 기여

○ 그간 국민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빈곤의 예방·완화를 지원하는 **핵심 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 수행**

* (총 수급자 수) ('15) 약 165만명 → ('18) 약 174만명 → ('21) 약 236만명 → ('24) 약 267만명

○ 특히 **'15.7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급여별 선정기준 상향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급여 보장성 확대** 및 수급자 **사각지대 해소 지속 추진**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교육('15), 주거('18))·완화('21), ▲주거급여(43%→48%)및 생계급여(28%→32%) 선정기준 상향, ▲재산기준 완화(4급지 개편, 기본재산 공제액 등 완화) 등

□ 올해는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7~'29)를 수립하는 해*로, 맞춤형 급여 개편 10여 년을 맞아 제도의 **주요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 제시 필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실태조사 및 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등을 종합하여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시행(제1차('18~'20), 제2차('21~'23), 제3차('24~'26))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국민의 최저생활을 두텁게 보장**하고, **자립과 사회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완결성 제고

○ 아울러 사회·정책적 환경*, 빈곤의 양상 등 변화하는 빈곤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 발전 방향**도 제시할 필요

* 인공지능(AI) 대전환, 인구·가족구조 변화, 고용형태 다양화 등

참고 추진 경과

○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 마련 연구용역* 추진

* 「'24~'26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보사연, '25.4~'26.9)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보사연, '25.11~'26.10)

○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 운영('26.1~10월)

-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공공부조 전반에 대한 논의를 위해 총 6차례 포럼 개최(1.29, 3.6, 4.17, 6.5, 8.26, 10.14)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급여별 소위원회 개최

* 총괄 소위원회 2회(1.7, 9.30), 생계·자활급여 소위원회 5회(5.28, 6.10, 6.16, 6.22, 8.28),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4회(4.17, 7.15, 9.8, 9.30), 주거급여 소위원회 6회(3.31, 4.28, 6.10, 6.25, 7.13, 9.16), 교육급여 소위원회 2회(7.22, 7.27),

○ 지자체 핵심요원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간담회(9.21, 11.12)

○ 종합계획 관련 공청회 개최(10.28)

□ **수립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2**(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 3년마다 급여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및 급여별 적정성 등 평가 실시 ⇒ 이를 종합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 **(실태조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생활실태 파악, 최저생계비 계측 등을 위해 **조사 실시(복지부), 심의·의결(중생보), 공표(복지부)**
- **(평가)**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복지부, 국토부, 교육부), 심의·의결(중생보)**
- **(종합계획)**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및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복지부), 심의·의결(중생보)**

* 소관 중앙행정기관(복지부, 국토부, 교육부)의 장은 소관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Ⅱ 정책 여건 및 현황

※ '24 국민실태조사 결과

1 정책 여건 : 양극화 심화

○ **(소득·자산 양극화)** 최근 **소득·자산 격차가 확대**되고, 계층간 생활여건이 벌어지는 **'K자형 양극화' 심화 우려**

- **소득 분배 악화와 자산 불평등 누적, 상대적 빈곤율*도 악화**

* ('21) 14.8% → ('22) 14.9% → ('23) 14.9% → ('24) 15.3%

소득 5분위 배율(상하위 20%간 격차)



* 가계금융복지조사(2025)

순자산 지니계수의 급격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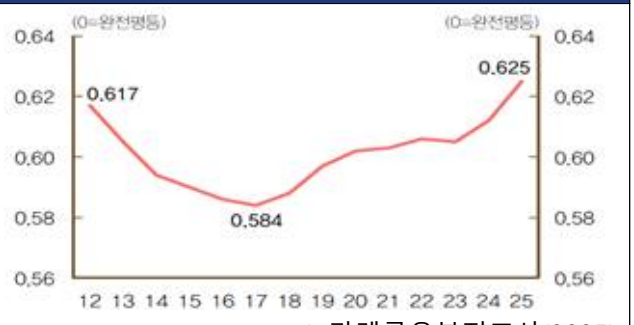

* 가계금융복지조사(2025)

○ **(저소득층 생활기반 약화)** 저소득층의 **자산 기반**과 **소비여력 취약**으로, **경제적 충격에 대한 대응력 부족**

- 저소득층 **가계수지 적자 구조** 지속으로 **기본생활 유지 부담 ↑**

○ **(계층 이동성 제약)** **소득·자산 격차가 교육·건강·주거 등 삶의 기회 격차**로 이어져 **계층 이동성 제약 우려**

- **경제적 여력 부족** 및 **소득계층 고착** 등으로 빈곤 탈출 및 자립 한계

저소득층 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



* 가계동향조사(2026.2분기)

소득분위별 이동 비율 (2023→2024년)



* 소득이동통계(2024)

2 빈곤 추이 및 전망

1 빈곤 추이 분석

○ **(빈곤율* 추이)**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기준 '20년까지 중위소득 50% 이하 시장소득 빈곤율은 증가,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감소

* **(빈곤율)** 전체 인구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 **'21년 이후**부터는 빈곤율 **정체** 또는 **소폭 악화** 추세

** **(중위 50% 이하 시장소득 빈곤율)** ('18) 20.2% → ('21) 21.1% → ('24) 20.9%
(중위 50% 이하 가처분소득 빈곤율) ('18) 16.5% → ('21) 14.8% → ('24) 15.3%

< 전체 인구 빈곤율 추이(중위소득 50% 이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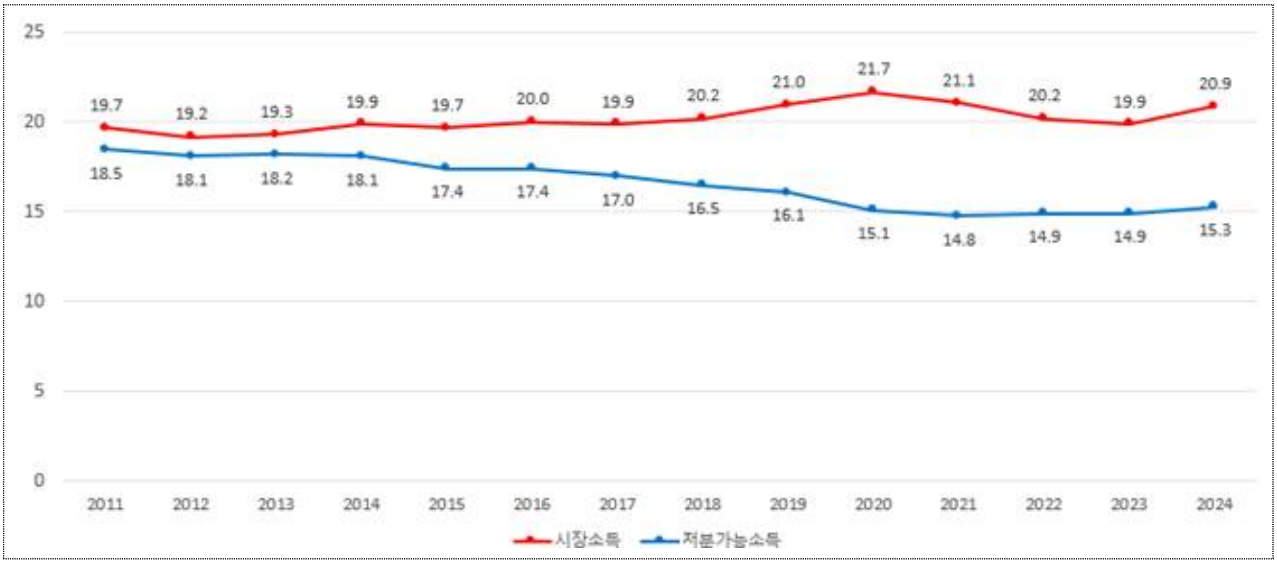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국가데이터처(2025)

○ **(연령대별 빈곤 추이)** '11~'21년 **근로연령인구**(18세~65세) 및 **은퇴연령인구**(66세 이상) 모두 **가처분소득 빈곤율*** **감소 추세**

* **(근로연령인구)** ('18) 11.5% → ('21) 10.1% → ('24) 10.3%
(은퇴연령인구) ('18) 43.3% → ('21) 39.3% → ('24) 37.7%

- 그러나 **은퇴연령인구의 빈곤율**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고, 특히 76세 이상 **고령 노인의 빈곤율은 정체***

* **(65~74세)** ('21) 30.1% → ('24) 26.6%, **(75세 이상)** ('21) 51.9% → ('24) 53.8%

< 연령대별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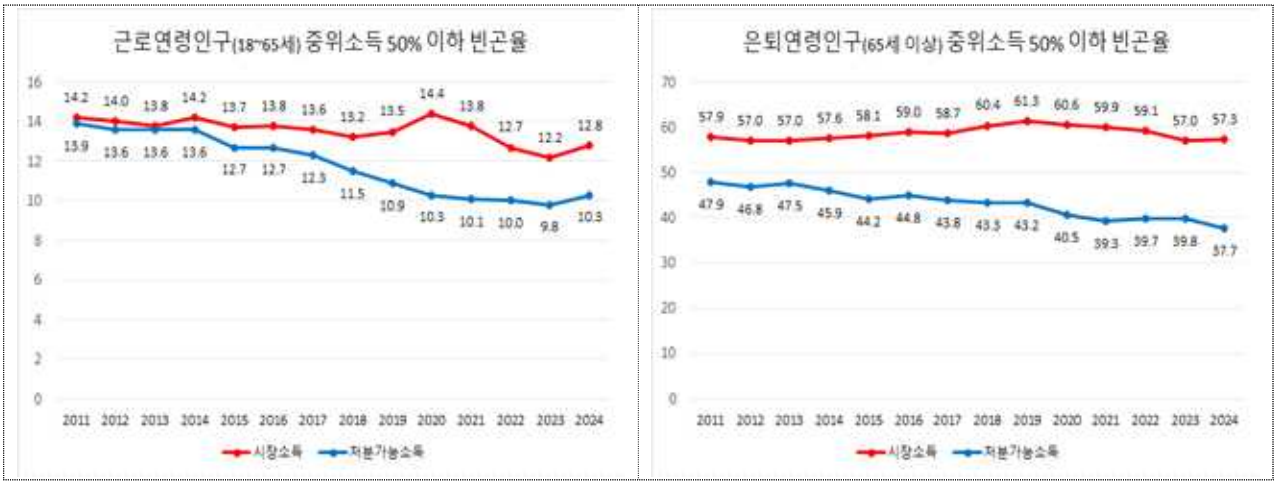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국가데이터처(2025)

○ **(소득구성 변화)** '11~'24년 균등화 **가처분소득*** **평균은 연간 2,570만원에서 4,472만원으로 꾸준히 증가**

* (균등화 소득) 가구원수가 다른 가구 간의 후생(복지) 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구별 소득을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조정한 중위소득

- 가처분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

* (근로소득) ('18) 78%, 2,522만원 → ('21) 77%, 2,849만원 → ('24) 77%, 3,441만(1.42배)
(공적이전소득) ('18) 7%, 240만원 → ('21) 11%, 404만원 → ('24) 10%, 428만원(1.78배)

< 소득원천 평균 및 가처분소득 평균 대비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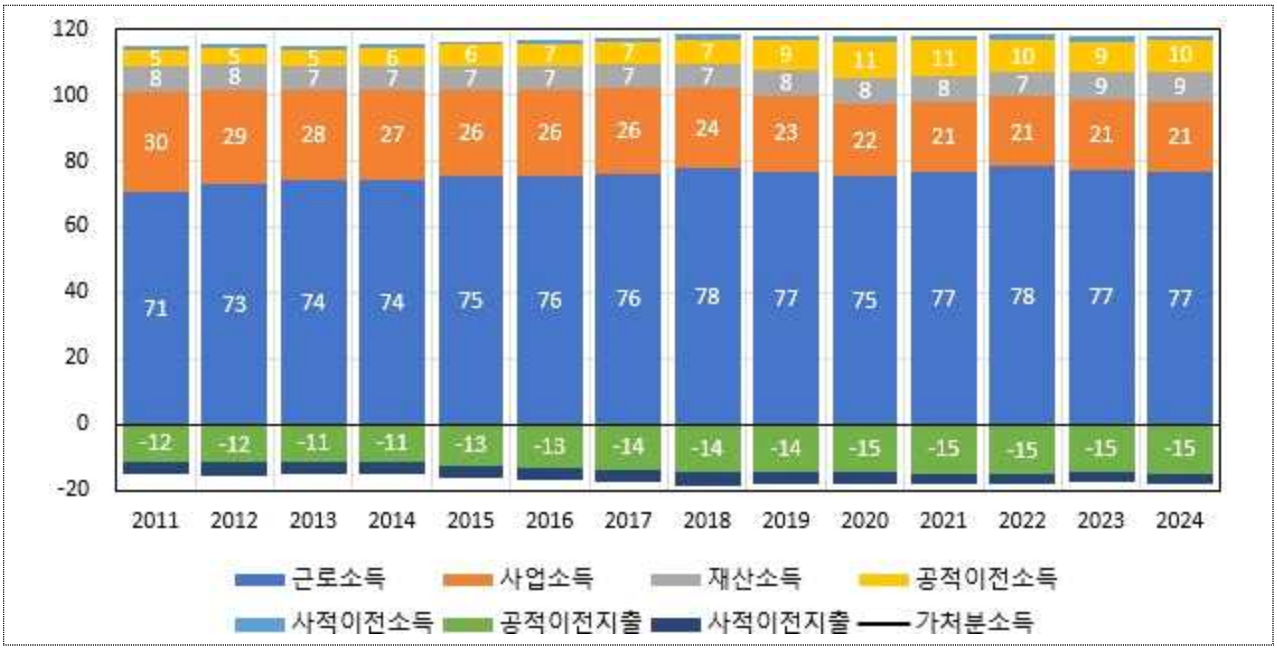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국가데이터처(2025)

2 개인 · 가구 특성

○ (연령 변화) 전체 인구* 및 빈곤층(중위 50% 이하)**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 증가

* **(전체 인구 중) (65~74세)** ('21) 10.0% → ('24) 11.8%, **(75세 이상)** ('21) 7.6% → ('24) 8.5%

** **(빈곤층 중) (65~74세)** ('21) 18.4% → ('24) 18.6%, **(75세 이상)** ('21) 26.4% → ('24) 29.0%

< 연령 변화와 중위소득 50% 이하 가처분소득 빈곤율 변화의 관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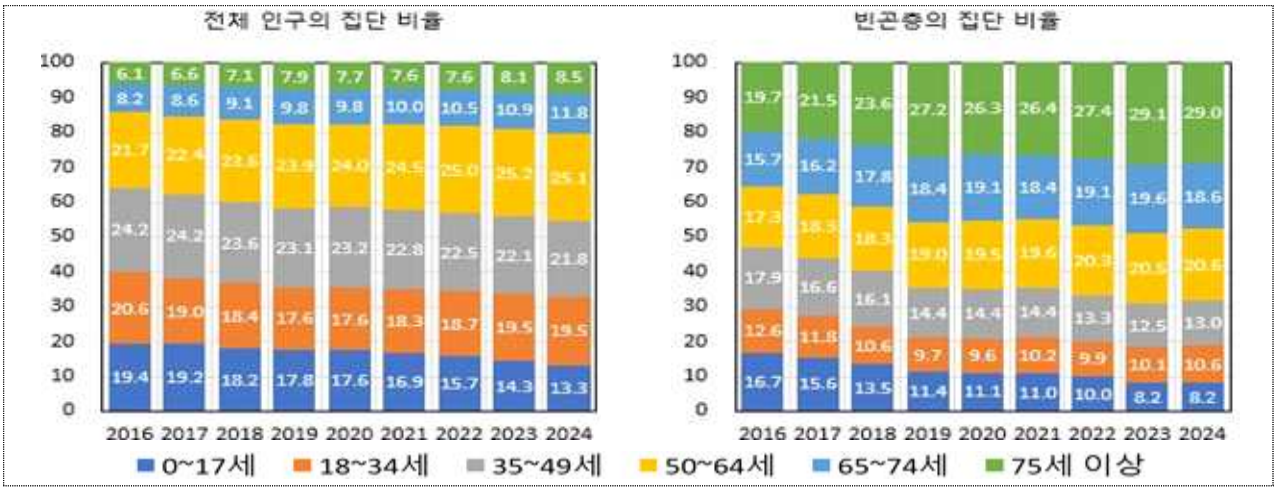

※ 자료: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국가데이터처

○ (가구규모 변화) 전체 인구 중 1~2인 가구에 속한 개인이 차지하는 비율 증가 및 **빈곤층에서 1~2인 가구 비율 집중**(71.4%)

* **(전체 인구) (1인)** ('21) 10.0% → ('24) 13.9%, **(2인)** ('21) 22.1% → ('24) 24.7%

** **(빈곤층) (1인)** ('21) 29.7% → ('24) 36.9%, **(2인)** ('21) 35.2% → ('24) 34.5%

< 전체 인구 및 빈곤층(중위 50% 이하)의 가구규모별 집단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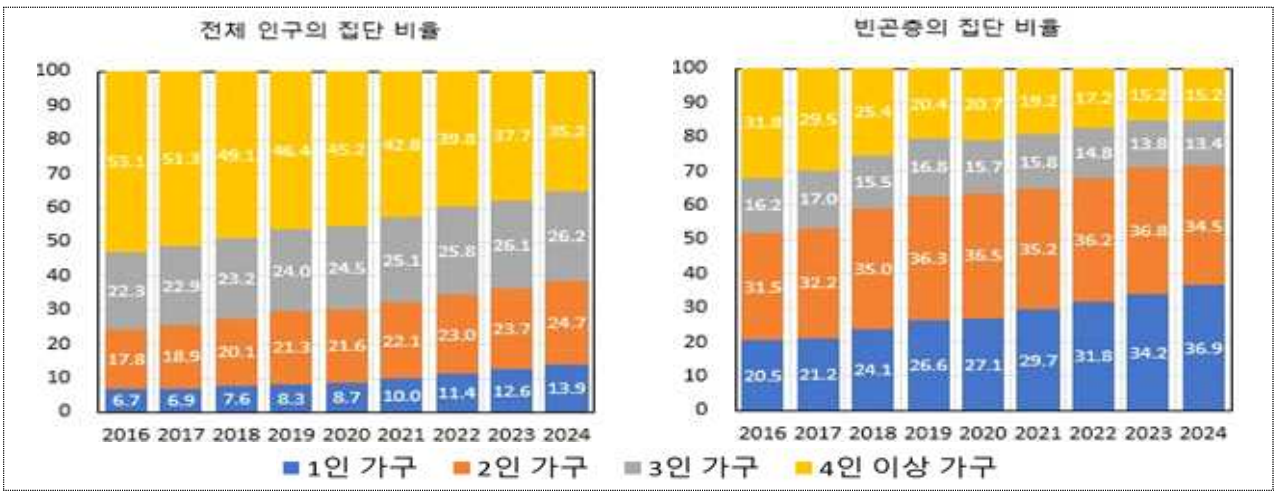

※ 자료: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국가데이터처

3 공적이전소득 · 지출의 빈곤 감소 효과

○ **(의의)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공적이전지출**(세금, 사회보험료 등)**을 차감**하여 **가처분소득을 정의**하므로,

* 가처분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지출

- **시장소득 빈곤과 가처분소득 빈곤의 차이**는 공적이전소득·지출의 **빈곤**(빈곤율, 빈곤갭비율 등) **감소 효과**를 의미

○ **(빈곤 감소 효과)** '20년 이후 공적이전소득·지출의 빈곤 감소 효과가 **코로나19 지원 축소 영향**으로 **'23년까지 감소**하였으나,

- **'24년에는** 중위소득 30% 및 50% 이하에서 **빈곤율 및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가 **모두 증가****

* (빈곤갭비율)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소득이 빈곤선에서 1인당 평균적으로 얼마나 미달하는지 나타내는 정도

** (중위 30%) (빈곤율) '23. 6.5%p → '24. 7.3%p, (빈곤갭비율) '23. 5.0%p → '24. 5.3%p
(중위 50%) (빈곤율) '23. 5.0%p → '24. 5.6%p, (빈곤갭비율) '23. 5.3%p → '24. 5.7%p

<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빈곤 감소 효과 >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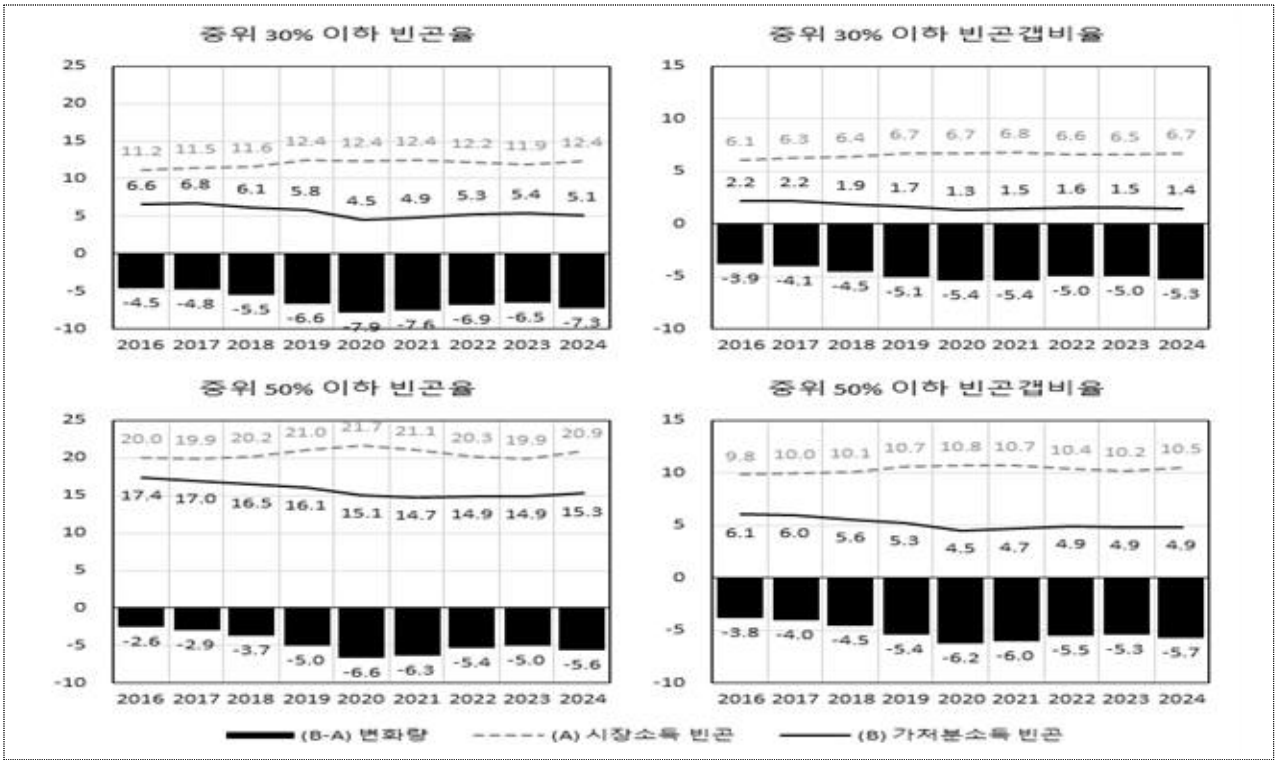

※ 자료: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국가데이터처

- 대체로 **빈곤선이 낮아질수록 빈곤 감소 효과는 상대적으로 큼**

* 빈곤선이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40%, 30% 이하로 감소**할 때 '24년 공적이전 소득·지출의 **빈곤율,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 증가**

< '24년 공적이전소득·지출의 빈곤 감소 효과 >

(단위: %, %p)

구분	중위 30% 빈곤선		중위 40% 빈곤선		중위 50% 빈곤선	
	빈곤율	빈곤갭비율	빈곤율	빈곤갭비율	빈곤율	빈곤갭비율
(A) 시장소득 빈곤	12.4	6.7	16.0	8.6	20.9	10.5
(B) 가처분소득 빈곤	5.1	1.4	10.0	2.9	15.3	4.9
(B-A) 변화량	-7.3	-5.3	-6.0	-5.7	-5.6	-5.7
((B-A)÷A×100) 변화율	-58.8	-79.2	-37.5	-65.9	-26.6	-53.9

※ 자료: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국가데이터처

○ (국제비교) 우리나라의 시장소득 빈곤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지만, '20년 이후 공적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가 정체함에 따라,

- '22년 기준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34개국 중 8위)

*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공적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가 작은 국가는 스위스, 멕시코 뿐

< '22년 OECD 회원국의 공적이전 빈곤 감소 효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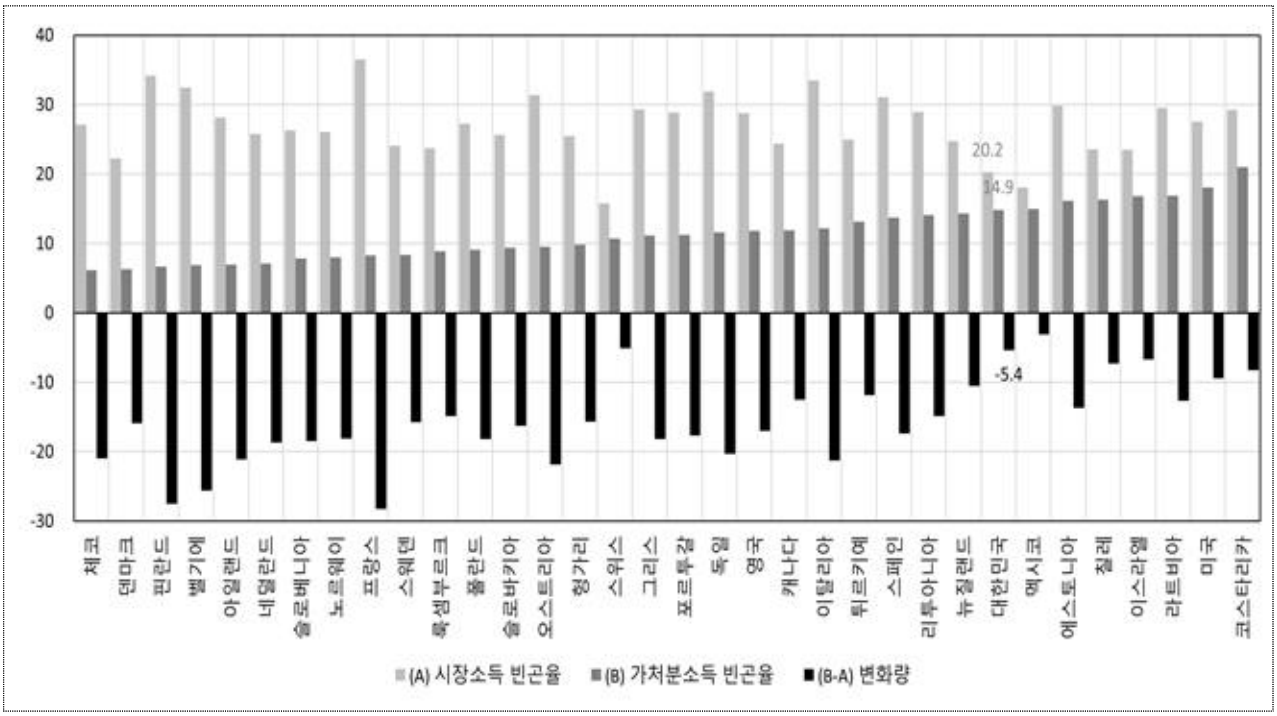

※ 자료: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OECD(2026)

2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와 생활실태

※ 출처: 각 연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보건복지부)
각 연도 주민등록인구현황(국가데이터처)

1 수급자 수 및 수급률

○ (수급 지속 증가) '15년 맞춤형 급여 실시 이후 증가 추세로 전환

- 특히 '17년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선정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으로 증가폭 확대

< 연도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 및 수급률 >

(단위: 명, %)

	'11	'12	'13	'14	'15	'16	'17
수급자 수	1,469,254	1,394,042	1,350,891	1,328,713	1,646,363	1,630,614	1,581,646
수급률	2.9	2.7	2.6	2.6	3.2	3.2	3.1
	'18	'19	'20	'21	'22	'23	'24
수급자 수	1,743,690	1,881,357	2,134,186	2,359,672	2,451,458	2,554,627	2,673,485
수급률	3.4	3.6	4.1	4.6	4.8	5.0	5.2

(단위: 명, %)



※ 자료: 각 연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보건복지부), 주민등록인구현황(국가데이터처)

2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

< 출처: 2024~2026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

○ **(수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사 기준연도)** 2024년

○ **(빈곤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50%

< 최종 조사가구 >

(단위: 부)

완료 부수	심층 조사					서비스대상 조사		
	기초생활 수급자	4인 가구	3인 가구	1인 가구	1인 청년 분리가구	장애인	노인	한부모
15,000	1,172	2,188	2,772	2,344	144	1,439	1,702	182

○ (빈곤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은 '21년 325만명 대비 **'24년 394만명으로 큰 폭 증가**

- 이는 제3차 종합계획을 통한 제도 개선이 **선정기준 자체를 대폭 상향**하는 효과에 기인

○ (수급자)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전체 수급자**는 '21년 227만명(164만 가구)에서 **'24년 257만명(188만 가구)으로 증가**

- 빈곤층 중 전체 **기초생활보장 수급 비율**은 '21년 69.8%에서 **'24년 65.3%로 다소 감소**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비수급 현황 >

(단위: %)

연도	'15	'18	'21	'24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수(A)	**165만**	165만	227만	257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전체(B)	308만	286만	325만	394만
수급자 비율 (수급(A)/전체(B))	53.4%	57.9%	69.8%	65.3%

* 시설 수급자 제외

※ **[참고] 비수급 빈곤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특성·양상 변화**

○ **(가구)** ’21년 대비 **2인 가구**(소규모화) 및 **65세 이상 가구주** 비율 증가

○ **(경제활동)** 참여하지 않는 대상(**실업·비경활**)이 가장 많으나 비율은 **감소**한 반면, **임시·일용직**(공공·자활근로, 노인일자리) 비율이 **크게 증가**

○ **(미신청사유) ’21년**에는 **엄격한 수급자 선정기준**이 다수였으나, **’24년**에는 **스스로 해결**하고자 미신청한 경우가 다수 차지

○ **(주요 공적소득보장 수급 현황)** 기초연금, EITC 등 제도 확대·안착으로 **공적소득보장제도**(아동 제외)의 **전체 수급 비율**은 **증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중 기초생활보장 및 타 제도를 **전혀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비율**은 **대폭 감소**(’21. 8.0% → ’24. 5.7%)

- 다만, 연령층에 따라 제도별 수급 비율에 차이* 존재

* ’19~34세’는 근로·자녀장려세제, ’35~49세’ 및 ’50~64세’는 기초(생계·의료, 주거·교육), ’65세 이상’은 기초연금, 근로·자녀장려세제, 공적연금이 증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공적이전 수급 비율 >

(단위: %)

연도	2021년					2024년				
수급자 연령대	전체	19~34세	35~49세	50~64세	65세 이상	전체	19~34세	35~49세	50~64세	65세 이상
기초(생계+의료)	57.0	53.6	57.5	71.9	46.4	52.3	54.8	67.0	76.5	36.4
기초(주거+교육)	65.5	64.1	70.0	77.3	53.9	60.8	63.4	80.8	81.8	42.9
기초연금	49.1	9.2	24.1	11.1	97.0	57.2	10.6	18.9	10.7	98.9
장애·한부모·아동	34.3	38.7	48.2	36.9	20.6	28.8	38.0	50.3	32.6	15.8
EITC	9.0	11.5	12.0	5.6	7.8	12.1	16.8	10.2	7.4	13.2
공적연금	19.1	4.9	9.5	12.7	31.2	24.4	2.9	9.0	8.4	40.3
비수급	**8.0**	27.8	15.8	11.4	1.0	**5.7**	28.0	9.6	10.0	0.6

Ⅲ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성과 및 평가

1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주요 성과

1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수준 강화

○ **(기준 중위소득의 지속 인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보장 수준의 근거인 **기준 중위소득 매년 역대 최대폭 인상**

* ('24) 6.09% → ('25) 6.42% → ('26) 6.51%

○ **(급여 선정기준 상향)**

- **(생계급여)** '17년 이후 7년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24)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로 **상향**('24)

* 주거급여 수급가구 : ('23) 141.5만 가구 → ('25) 161.7만 가구

<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변화 >

급여	'15.7	'16	'17	'18	'19	'20	'21	'22	'23	**'24**
생계급여	28%	29%	**기준 중위소득 30%**							**32%**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3%				44%	45%		46%	47%	48%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 **(재가 의료급여 전국 확대)**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24.7.~, 전국 지자체), **대상자 확대*** 및 서비스 **지원금액 한도 인상**(월 60→73만원, 21.7%↑, '26)

* (기존) 입원 필요성이 낮은 장기 입원자(1개월) → (확대) 입·퇴원 반복환자 추가('24)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현실화*)** 기준임대료를 현실화(목표기준임대료 부족분의 45% 수준 반영)하고 **3·4급지 보장수준**을 **개선**

* '24~'26년 인상률 : 1급지 3.2~4.8%, 2급지 4.9~6.8%, 3급지 5.6~8.3%, 4급지 7.3~11.0%

○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 초·중·고 모두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최저교육비**('20 기준) **대비 100% 수준**으로 **교육활동지원비** 인상('24)

2 빈곤 사각지대 적극 해소

○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개선)**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및 비수급 빈곤층 해소를 위해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예외 **기준 상향 조정**(**연 소득** 1억→**1.3억**, **일반재산** 9억→**12억**, '25)

* '22년 통계청 가금복 상위 10%(소득 1.28억 원, 재산 12.4억 원)

- **(의료급여)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생계급여 수준), 부양의무자 **기본재산공제액 상향***('24) 및 **부양비**** **폐지**('26)

* (기존) 대도시 228 / 중소도시 136 / 농어촌 101.5(백만원)
→ (개선) 서울 364 / 경기 294 / 광역·세종·창원 283 / 기타 195(백만원)

** 부양의무자가 소득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한다고 간주하는 금액

○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엄격한 자동차 기준**으로 인한 **수급 탈락 최소화**를 위해 **다자녀·생업용** 등 필수재인 경우 **기준 완화**

< 자동차 재산산정 기준 변경 내용 >

<table>
<tr><th>유형</th><th>'24</th><th>'25</th><th>'26</th></tr>
<tr><td>다자녀
(3인→2인)</td><td colspan="2" rowspan="2">월 100% 환산율 적용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 (승용)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 10년 이상 또는 5백만원 미만
(승합·화물) 소형 이하 + 10년 이상 또는 5백만원 미만</td><td>다자녀 기준 완화
(자녀 3인→ 2인)</td></tr>
<tr><td>다인
(6인이상)</td><td></td></tr>
<tr><td>생업용</td><td colspan="3">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 재산가액 산정 시 제외(1대 한정)
* (승용) 1,600cc → 2,000cc 미만</td></tr>
<tr><td>승용</td><td>월 100% 환산율 적용</td><td colspan="2">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 (승용) 1,600cc, 2백만원 → 2,000cc, 5백만원 미만</td></tr>
<tr><td>승합·화물</td><td colspan="2">월 100% 환산율 적용</td><td>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 (승합·화물) 1,000cc, 2백만원
→ 소형 이하, 5백만원 미만</td></tr>
</table>

○ **(재해취약주택 지원 강화)** 지하층 등 **침수우려** 주택의 **침수방지시설*** 및 **쪽방, 고시원** 등 비적정거처 거주자에 대한 **주거상향 지원**

* 방범용 창호, 침수경보장치, 차수판, 배수펌프, 세대역류방지장치 등

** (지원실적) 침수방지시설: ('23) 473세대, ('24) 175세대, ('25) 128세대
주거상향지원사업: ('23) 9,338호, ('24) 11,280호, ('25) 11,795호

○ **(긴급복지 지원 강화)**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생계지원금 인상*** 및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로 저소득 위기가구 보호 지속 강화

* 지원금 : (1인) '24. 71만원 → '26. 78만원, (4인) '24. 183만원 → '26. 200만원

** 소득 기준 : ('24) 1인 167만원, 4인 430만원 → ('26) 1인 192만원, 4인 487만원
금융재산 기준 : ('24) 1인 823만원, 4인 1,173만원 → ('26) 1인 856만원, 4인 1,249만원

3 탈수급 및 빈곤완화 적극 지원

○ **(근로소득 공제 확대)** 적극적 근로 유인을 통한 탈수급 유도 및 노인 빈곤 완화 등을 위한 근로소득 공제 확대

- **(청년)** 공제 대상 **연령 기준 단계적 확대*** 및 **공제율 인상****

* ('24) 24→29세 → ('26) 34세 이하(「청년기본법」 상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 기준 참고)

** ('24) 4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30% 추가 공제 → ('26) 60만원+30%

- **(노인)** 공제 대상 **노인 범위 확대 및 추가 정액 공제* 도입**('25)

* 75세 이상 → '6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30% → '20만원+30%' 공제 적용

○ **(맞춤형 자활기반 마련)** 직무, 사회관계 등 **실제 자활역량을 반영**토록 **자활역량평가 개편**('24), **全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사 배치**('25)

○ **(자활기업 지속성 제고)** 창업 사전·사후 단계별 지원의 체계화, **중앙경영지원단 구축·운영 등을 통해 자활기업 유지 기간 증가***

* 2년 유지율: ('23) 86.8%→('25) 89.4%, 평균유지기간: ('22) 7.4년→('25) 8.8년

○ **(자산형성 지원 확대) 청년층 자산형성 확대***, 가입기간에 따른 **정부지원금** 인상**을 통한 취약계층 장기근속 유도

* 청년내일저축 가입자 : (누적) 9만명('23)→ 16만명('25)

** 희망키움통장Ⅱ 정부지원금 : ('24) 월 10만 원 → ('25) 1년차 월 10만 원 / 2년차 월 20만 원 / 3년차 월 30만 원

④ 제도 내실화 및 관리 강화

○ **(부정수급 관리 강화) 1천만 원 이상 부정수급 시 반드시 고발**토록 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 **수급자 대상 학습 콘텐츠 개발·배포**('26)

* (부정수급 환수 결정) ('23) 12,776건, 15,940백만원 → ('24) 12,553건, 17,372백만원 → ('25) 11,104건, 18,430백만원

○ **(자활 지원 인프라 고도화)** 자활복지개발원 및 광역자활센터의 **현장지원 강화***, **종사자 처우개선**** 실시

* 법률·노무·회계 자문하는 중앙경영지원단 구축·운영('24~), 자활사업 규모화 및 자활기업지원 강화 방향으로 광역자활센터 성과평가 개편('24)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24) 95% → ('26) 98%

○ **(주거급여 시스템 고도화)** 주택조사, 수선공사, 임대주택 등 **주거 관련 데이터**의 **통합 관리, 전산화** 등 **주택조사 업무 효율화**('24)

* 행복이음 송수신 데이터 확대, 조사 진행 상황 알림, 조사 방문지 안내 서비스 연동 등 기능 연계, 원스톱 현장조사 모바일 앱, 온라인 사전조사 등록 등 가능한 대국민 웹사이트 개발

○ **(교육급여 바우처 안착)** '23년 바우처 도입 이후 **안내·홍보 강화**, 제도·시스템 개선으로 **수급자 편의 제고*** 및 **신청률****·**만족도 향상**

* 바우처 자동신청 처리 확대, 사회복지시설 학생 심사 자동화, 신청 청구 다양화 등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률 : ('23.) 95.2% → ('24.) 96.3% → ('25.) 97.4%

2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적정성 평가

1. 생계급여 적정성 평가

1 최저생계비 계측 결과

○ **(개념)**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유지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급여수준의 적정성 평가 기준으로 활용

○ **(계측방식)** 전물량(마켓바스켓) 방식*으로 계측하되, 평가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대안적 방식(반물량, 주관적, 박탈지표) 계측 병행

* 생활에 필요한 숏 소비물자를 모두 물량으로 표시하여 그 필요한 물자의 구입 가격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최저생계비 산출

○ **(결과)** '26년 광역·세종·창원 지역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2,534,861원**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26년 계측 최저생계비	3,039,124원	2,807,182원	**2,534,861원**	2,369,338원

2 생계급여 수준의 적정성 검토

○ **(검토 방식)** 전물량방식의 **광역·세종·창원 지역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에서 **타법지원액을 제외한 값**을 토대로 적정성 검토

* 계측 생계급여 = 최저생계비 - (최저생계비 중 주거비, 현물 및 타법지원액)

○ **(생계급여 수준의 적정성)** **'26년 고시한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2%인 **2,078,316원**

- '26년 **최저생계비**에서 **'주거비'와 '현물 및 타법지원액'을 감액한 생계급여** 수준은 광역·세종·창원 지역 4인 가구 기준 **1,519,329원**

⇒ '26년 **고시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이 최저생계비 계측을 통한 생계급여보다 **558,987원*(36.8%) 더 높게 나타남**

* '23년 계측치와 실제 생계급여 간 차이(127,462원)보다 증가

구 분	'26년 고시 생계급여	'26년 계측 최저생계비	주거비 + 현물(의료비, 교육비) 및 타법지원액	'26년 계측 생계급여	고시-계측 생계급여 차이
광역·세종·창원 4인가구	**2,078,316원**	2,537,536 원	- 327,963원 + 690,243원 = 1,018,206원	**=1,519,329원**	**558,987원** (36.8%⬆)

2.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

□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역할 충실히 수행

○ 급여항목에 대한 의료비를 두텁게 지원하여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제고** 및 **의료비 부담 완화*** 기여

* 보장률(급여+비급여, %): 의료급여 91.3 vs 건강보험 64.5 /
가구소득 대비 의료비 비중(%): 의료급여 6.4 vs 건강보험 소득 1분위 13.5 vs 건강보험 일반 5.0

□ 그러나, 의료비 지원만으로는 건강성과 향상과 지속가능성 확보에 한계

○ 수급자의 **복합적 취약성** 및 **건강·돌봄 욕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는 **사후적 의료비 지원** 및 **지출관리 위주** 운영

* '15~'25년간 노인 32.2→46.4%, 1인 가구 증가, 만성질환 심화, 아동·청년 만성·정신질환 2배 증가

○ **'의료 이용 많으나 건강성과는 낮은' 구조적 역설 발생**

- **예방·관리 미흡** 및 **미충족 의료** → **장기 입원, 건강 결과 악화***, **비의료적 욕구**(주거, 돌봄 등) 미해소 → **사회적 의료 이용** 유발

* 건보 가입자 대비 예방 가능 입원 4.9배(2,068명/10만명), 회피 가능 사망 6배(554.7명/10만 명)

의료 이용의 배경	필요한 지원	제도적 대응
질병·부상	치료	진료비 지원(주된 지원)
건강개선	예방·건강관리	특화 프로그램·인프라 미흡
퇴원 후 갈 곳, 돌볼 사람 없음	안정적 주거 확보, 돌봄	재가 의료급여 및 타 지원과의 연계는 제한적 * 의료급여관리사 통해 年 3천 명 지원
일상생활 어려움	재가 서비스·돌봄	
사회적 고립	사회참여·일상 활동	

- **공급체계**에서 유발되는 **과잉의료**에 대한 **관리 기전 미흡***, **건강보험과의 보상 격차****로 인한 적정진료 제공에 제약

* 의료급여 자격 전환 시 물리치료 평균 진료비 +37,825원, 수가 개수 2.5배 / 신경차단술 +64,301원, 2.0배
** 정신과 입원 및 외래 혈액투석 정액 수가, 입원환자 식대 수가 격차 존재

○ 수급자 수 및 인당 진료비 증가 추세 속 현행 **의료비 지원 중심 구조 유지** 시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심화

* (연평균 수급자(명)) 152.4만('23) → 154.5만('24) → 159.5만('25) → 171.2만 명('26.10월)
** 진료비 지출: '26년 14.7조 원(예상) → '35년 24.7조 원 전망('25, 보건사회연구원)

3. 주거급여 적정성 평가

1 임차급여 지원기준의 적정성 평가

○ **(평가기준)** '25년 최저주거수준 시장임차료 계측 결과 3인 가구 기준 1급지 64.9만원, 2급지 50.5만원, 3급지 38.5만원, 4급지 34.4만원

* 제3차 계획 대비 1급지 7.8만원(4.4%), 2급지 5.3만원(3.8%), 3급지 4.1만원(3.8%), 4급지 5.7만원(6.2%) 증가

- '22~'25년 **연평균 증가율**(3인 기준)은 '19~'22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아졌으나, 4급지**는 타 급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

○ **(급여 수준의 적정성) '26년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수준 시장임차료에 기초한 **목표 기준임대료 대비 약 80% 수준**

* '27년 목표 기준임대료 대비 '26년 기준임대료 급지별 비율은 3인 기준 1급지 82.0%, 2급지 79.6%, 3급지 76.8%, 4급지 71.1% 수준

** 제3차 계획에서 급지간 형평성 개선을 위해 개편한 산정방식 적용(시장임차료 전국 계측값(35%) + 급지별 계측값(65%) 가중평균)

2 수선유지급여 지원기준의 적정성 평가

○ **(수선한도의 적정성)** 최근 공사실적을 반영한 대보수 노후도(B·C등급) 발생비율과 공사비를 반영한 결과, **평균 필요 공사금액**은 **약 1,628만원***

* 대보수: 30.7만원/㎡ × 53㎡(평균 면적) = 1,628만원

- 3차 계획 시 필요액의 약 77% 수준이던 수선한도액은 '25년 1,601만원으로 인상되어, **현재 필요액**(1,628만원)의 **98.3% 수준**까지 상향

○ **(평가등급 대비 공사시행 비율) C등급(심각) 평가 대비 실제 공사 시행**은 최근 6년간('20~'25년) 50% 미만 수준으로, **'25년**에는 **43.5%**

* '20~'25년 C등급 평가 건수는 감소 추세이나, 실제 공사 시행건수도 함께 감소하면서 평가 대비 시행비율은 39.6~47.0% 수준

- '25년 기준, **조명**(75%), **창호**(71,2%), **부엌**(68.0), **도배·장판**(69.3%)은 **시행 비율이 높으나, 기초·지반침하**(6.0%), **배수**(1.7%) 등의 **구조 공사**는 **낮음**

⇒ '20~'25년 동안 지속적인 노후도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부 항목**은 **공사 시행** 비율이 낮아 **시행률 제고**가 **필요**

4. 교육급여 적정성 평가

1 최저교육비 계측 결과

○ **(개념)**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위해 지출**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

○ **(기준)** '23년 **표준가구**에 포함되는 **자녀**(중3 여학생, 고2 남학생) 대상 **교재비, 보충교육비, 문방구비**로 구성하여 계측(초등학생 미계측)

< '23년 최저교육비 계측 결과 >

(단위 : 원)

구분		중학생	고등학생
교재비(부교재비)		292,000	316,000
보충교육비	EBS교재(중고)	84,510	83,700
	수련회(체험학습비)	156,200	388,363
문방구비(학용품비)		146,346	156,072
계		679,056	944,135

2 교육급여 수준의 적정성 검토

○ 교육활동지원비를 **매년 인상**하여 교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23년도 **최저교육비 대비 고등학교**는 **91% 수준**

- 교육급여 수급자의 **지원 수준 적정성**에 대한 **만족도***가 **지속 하락**하여 **상향 노력 필요**

* 교육급여 지원 수준 적정성 만족도 : ('15) 3.35점 → ('18) 3.19점 → ('21) 3.18점 → ('24) 3.02점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5점 척도)

< 최저교육비 대비 교육활동지원비 충족율 >

(단위: 원)

구분	최저교육비 ('23)	'24		'25		'26	
		지원액	충족율	지원액	충족율	지원액	충족율
초	460,860*	461,000	100%	487,000	106%	502,000	109%
중	679,056	654,000	96%	679,000	100%	699,000	103%
고	944,135	727,000	77%	768,000	81%	860,000	**91%**

* 초등학생은 '20년 최저교육비 기준('23년 미계측)

5. 자활급여 적정성 평가

1 자활사업 대상자 및 지원수준의 적정성

○ **(급여 수준)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한 **자활급여 지속 인상****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대상의 급여 보장성 강화

* (시장진입형 근로 단가) '26년 최저임금 대비 80% ('24년 78.5%)

** (연도별 자활급여 인상률) ('23) 2.1%, ('24) 2.5%, ('25) 2.9%

○ **(참여자)** 선정기준 완화 등으로 **'25년 6.4만명**까지 꾸준히 **확대**

- **조건부 수급자**(의무참여)의 **참여 비중***은 **증가**하고,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자(희망)비중은 **감소 추세**이나, **대기자**도 **지속 발생**** 중

* (전체 참여자 중 조건부 수급자 비중) ('22) 57.1% → ('25) 64.9%

** (대기자 수) ('23) 9,236명 → ('25) 7,619명

- 취·창업 여건 악화, 참여자 고령화, 탈수급 유인 미흡 등의 영향으로 **자활성공률* 지속 하락, 장기 참여자**** 비중도 **증가**

* ('23) 25% → ('25) 18%, ** (5년 이상 참여자 비중) ('23) 9.8% → ('25) 18.7%

2 자활기업 육성 성과

○ 자활기업의 **유지 기간 및 매출액 증가**로 운영 안정성 향상

* (자활기업 2년 유지율/매출액) ('21) 76.3% / 2,228억원 → ('25) 89.4% / 6,090억원

- 취·창업 유인 및 전략 둔화, 경기침체 등으로 **기업 창업이 정체**('21년 76개 → '25년 59개)되고 있어 **지원 전략 재정비 필요**

3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효과성

○ 희망저축계좌 유지요건 완화, 지원금 증액,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준 완화 등 **지원 확대**에 따라 **누적 가입자 수가 약 4배 증가**

* 희망저축계좌 ('23)1.7만명 → ('25)3.4만명, 청년내일저축 ('23)9.0만명 → ('25)16.4만명

- 다만, 만기 지원금의 **탈수급 견인 효과 부족, 자활사업 재진입** 등으로 자산형성의 탈수급 효과 강화방안 강구 필요

3 종합 평가 및 시사점

1 **(성과)**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기초생활보장 범위 및 수준이 지속 확대되면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

○ 급여별 선정기준 차등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통해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욕구별 보장 강화

2 **(한계)**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잔존**하며, 급여별 보장 강화가 **실질적 빈곤 개선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

○ 비수급 빈곤층의 소득 정체, 낮은 자활성공률 등 빈곤의 장기화와 자립유인 부족, 복잡한 선정기준 등이 제도 접근의 문턱으로 작용

◇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그 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양극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필요**

○ **(기본생활 보장 국가책임 강화)** 양극화가 기본생활 및 삶의 기회에 대한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안전매트 역할 강화 필요**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필수생활 보장

☞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가장 어려운 국민부터 두텁게 보호

○ **(기초생활보장 역할 확대)** 기본생활 보장의 출발점으로서,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역할 확대 필요**

☞ 양극화가 빈곤 고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4차 종합계획을 통해 보장 범위·수준 확대 및 자립과 회복의 기회 강화

◇ 이에 향후 3년간은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그간 보장이 충분하지 못했던 영역을 중점적으로 개선**

* ① 제도 밖에 있는 빈곤층 보호를 강화하고, ② 소득·재산 및 가구특성 변화를 반영하여 선정·보장수준 확대, ③ 안정적 자립을 위한 기반 강화

- **중장기로** 인구·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기능을 재정립하고, 관련 사회보장제도와 연계·정합성 강화**

Ⅵ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추진방향

비전	‘모두의 복지’를 위한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
목표	· (총괄) 기초생활보장급여 빈곤 완화 효과 23% → 27% 확대 – (더 넓게) 빈곤층 중 공적소득지원 비수급층 5.7%→4% 감소 – (더 두텁게) 생계급여 기준 32%→35%, 주거급여 기준 48%→50% – (더 나아지게) 생계급여 수급자 자활성공률 18%→21% 제고

[추진방향 1] 변화하는 빈곤에 대응하는 기초생활보장 고도화

1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보장기준 확대	1. [생계급여] 보장기준 실질적 개선 2. [의료급여] 예방·관리부터 일상복귀까지 이어지는 건강보장 전환 3. [주거급여] 주거여건을 반영한 보장성 강화 4. [교육급여] 최저보장 수준·범위 확대
2 제도 밖 빈곤을 줄이는 보호체계 강화	1.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 재산 소득환산체계 재설계 기반 마련 3. 신청주의 한계 보완을 통한 수급권 실현 강화 4. 빈곤 진입 예방을 위한 긴급복지의 위기안전매트 기능 강화 5. 연속적 의료안전망 구축
3 근로를 통한 실질소득 증대 및 자립기반 강화	1. 수급자 대상 근로유인 및 자립지원 강화 2.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 3.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탈수급 유인 확대 4. 자활기업 지원을 통한 자립지원 강화
4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합리화·효율화	1. AI·데이터 기반 급여업무 관리 고도화 2. 필요한 의료보장 강화 및 과다이용 유발 구조 개선 3. 급여별 인프라 정비 및 전달체계 개선

[추진방향 2] 기초생활보장의 미래지향적 발전체계 구축(중장기)

1	사회보장체계 내 기초생활보장제도 역할 재정립
2	저소득층의 기본적 욕구 보장 강화 및 급여별 운영체계 개편
3	인구구조 및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재설계

【핵심 추진과제】

❶ [빈곤 예방] 위기가구에 대한 예방·회복 지원제도 확대

☞ **[목표] 갑작스러운 위기**가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기가구의 신속한 생활 회복 지원**

· **양극화 심화**로 인한 **서민·중산층의 경제적 취약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복지** 소득·재산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검토

* 現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1인가구 기준192만원, 4인487만원), **(일반재산)** 2.4억, **(금융재산)** 기준중위소득 100%

· **(긴급복지) 즉각적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우선드림**(30만원) **신설**, 위기상황 지속되는 **반복 수급 가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강화, 읍·면·동 적정인력 배치 등 **지방정부 전달체계 개선**

❷ [기본생활 보장] 보장 수준은 높게, 제도 밖 빈곤층은 더 넓게 포괄 보장

① 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 인상

☞ **[목표] 필수생활**에 대한 **보장 수준**을 높여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확보**

· **(생계급여)** '28년부터 매년 1%p씩, '3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단계적 인상

· **(의료급여)** 예방-치료-회복-재가까지 지원 강화, 건강보험과 분절·격차 축소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단계적 인상, 기준임대료·수선유지급여 인상

② [사각지대] 부양의무자 예외 기준 단계적 폐지

☞ **[목표]** 가족의 **소득·재산**에 따른 **수급 제한**을 줄여 **보호가 필요한 가구**의 **사각지대 해소**

· **(생계·의료) 중증 장애인** 포함 가구 부양의무자 **예외 기준 폐지**('27.下)

· **(생계) '30년까지 단계적으로 75세 이상 노인** 가구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검토**

· **(의료)** 의료·돌봄 필요 높은 대상에 대해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만 수급 제외 검토(現 생계급여 기준)

③ [사각지대] 재산 소득환산체계 개선

☞ **[목표] 보유 재산**과 **실제 생활 여력 간 괴리**를 줄여 가구 여건에 맞는 **적정 보호 실현**

· 실제 현금화가 어려운 자동차·주택 등 **재산 유형별 산정기준 합리화 방안 마련**

* (예시) **(자동차)** 소득환산율 월 100%, 예외적 월 4.17% → 소득환산율 월 4.17%, 예외적 월 100% 적용
(주거용 재산) 소득환산율 월 1.04% → 소득환산율 완화 → 한도액까지 소득산정에서 제외

· 재산의 유형별 환산율을 계속 세분화·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득과 재산을 별도로 평가하는 재산기준 체계로 전환 검토**

❸ [빈곤 탈출] 근로·자산형성·탈수급을 잇는 자립 경로 구축

☞ **[목표] 근로**가 **소득·자산 증가**로 이어지고, **탈수급 이후 생활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립 기반 강화**

· **(근로유인 강화)** 지속적으로 일할 유인을 높이고, 노동시장 진입 및 자립 기반 마련 지원

- ①**(청년)** 근로소득공제 등 근로활동을 통해 증가한 소득을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연계 강화**하는 방안 검토

- ②**(중장년) 근로소득공제 확대 검토**(예. 30%→20만원+30%) 및 참여자 욕구와 직무경험, 특성을 반영한 **특화 자활근로 모델*** **개발**

* (예시) 시설관리·환경정비 등 공동작업형 업종, 1인가구의 지역사회 참여형 사업단 모델 등

· **(자산형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가입자 규모 확대, 탈수급 지원금 및 추가 적립금 지원** 검토

· **(탈수급 부담 완화)** 근로소득 증가로 수급기준 초과해도 자립 기반 마련 시까지(예: 3년) 수급자격 유지하는 **의료급여 '자립이행 특례' 도입** 검토

Ⅴ 주요 추진과제

[추진방향 1] 변화하는 빈곤에 대응하는 기초생활보장 고도화

◇ 3년 내 제도의 사각지대와 보장기준을 실질적 개선하고, 변화하는 빈곤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반 마련

◇ 제도 개선과 함께 **급여관리의 정확성·효율성 제고** 및 **정책의 실행력과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운영체계 구축**

1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보장기준 확대

1-1. [생계급여] 보장기준 실질적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선정기준)** 그간 지속적 인상에도 불구, 선정기준을 초과해도 **실질적인 빈곤상태에 있는 저소득층**이 여전히 존재

- **하위소득계층의 적자, 소득계층 간 격차 확대*** 등 변화하는 빈곤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두터운 소득보장 기반 강화** 필요

지표			'21.4분기	'24.4분기	'26.1분기
빈곤심화	1분위(하위 20%) 가구 적자 규모(만원)		30.5	34.9	51.9
	1분위 가구 중 적자 가구 비율(%)		57.6	56.9	62.5
양극화	전년 대비 가처분소득 증가율(%)	상위 20%	7.1	4.9	5.1
		하위 20%	8.8	4.6	1.9

○ **(기준 중위소득)** 새로운 산정방식*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수준이 **공공부조 기준으로서의 적정한지**에 대해 **평가·검증 필요**

*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 적용을 원칙으로, 최신 소비자물가지수, 실질경제성장률 등 주요 사회·경제 지표를 반영

1 생계급여 보장수준 단계적 상향

▲ **(국정과제 77-1) 빈곤을 줄이고 기회를 늘리는 생활안전망 강화**
- '3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단계적 인상

○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28년부터 매년 1%p씩 인상**하여 **'3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 3년 후 기초생활보장 평가 시 수급자 규모 및 최저생활 보장 수준, 빈곤갭 감소효과 등을 고려하여 **보장수준의 적정성 평가** 추진('29)

2 기준 중위소득 산정·활용체계 재정립

○ **(새로운 산정방식 적용)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27~)

- 가금복 중위소득의 **변동성과 시차 문제 보완**을 위해 **최신 소비자물가지수, 실질경제성장률(GDP)** 등 주요 사회·경제 지표를 반영

- 통계적 보완 외에도 **상대빈곤 완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적정성 및 국가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증가율 조정 가능

○ **(법령 규정 정비) 산정방식에 활용하는 주요 사회·경제지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28)

○ **(산정방식 평가·검증) 3년간 적용**한 후 **기준 중위소득의 적정성 평가** 및 **산정방식 검증** 추진('29)

- '26년 가금복 발표('27년 말) 이후, '21~'2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 평가 실시

※ [참고]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의 주요 내용

○ **(현황)** 기준 중위소득은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의 합('21~26년까지 적용)

○ **(개편)**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이하 가금복)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확화

- 최신 소비자물가지수, 실질경제성장률(GDP) 등 다른 주요 사회·경제 지표를 반영토록 하되,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취지도 함께 고려

1-2. (의료급여) 예방·관리부터 일상복귀까지 이어지는 건강보장 전환

【현황 및 문제점】

○ 사후적 의료비 지원 위주로 **예방·관리, 회복·재활** 등 **지원 공백**

- 예방·관리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질환 발생·중증화 이후 치료에 지원 집중 → 예방 가능 입원**은 **건강보험 가입자 대비 4.9배**
- 치료 후 기능 **회복·재활 지원 부족**, 건강개선에 한계

○ 돌봄·주거 등 **비의료적 필요**를 **의료 이용으로 대체**

- 돌봄·주거 등 의료 外 필요로 인한 **사회적 입원** 발생,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 지원 미흡**은 **입원 장기화·재입원**으로 연결

1 예방·관리체계 강화

○ **(검진 개선)** 65세 이상 **수급자 국가 건강검진 항목 개선**(혈액·요검사, 흉부엑스레이 검사 등 도입) 통한 **검진 형평성 제고 검토**

* 예: (現) 노인건강진단(지역자율사업, 164개 시군구 미시행) + 노인건강진단 실시 外 항목만 국가검진 → (改) 건강보험 가입자의 일반건강검진과 검진 항목 동일화

- **국가 암 검진* 미수검자** 대상 **사례관리 실시**

* 암 검진 수검률('25) : 의료급여 수급권자 31.0% vs 건강보험 가입자 61.4%

○ **(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금연, 절주, 영양, 운동 등) **참여* 활성화** 및 **방문 건강관리 사업 확대** 연계

* 사업 대상자에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추가, 건강관리계획 수립 시 맞춤형 프로그램 적극 연계

○ **(만성질환 지속 관리)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 활성화** 및 **취약계층 진료 개선방안** 검토

※ (英) NHS 사회적 처방·연계 체계: 의사(GP)가 환자 진료 시 고립, 주거 등 사회적 요인이 문제라고 판단하면 사회적 처방 수행, 링크 워커(Link Worker)를 통해 자원·서비스 연계('19~)

○ **(정신건강 관리)** 신규 수급자부터 **정신건강 검사 지원** 통해 **위기 수준별 필요 서비스 연계***로 위험군 조기 발굴 및 적기 지원 검토

* (일반 정서 저하 위험군)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연계
(자살·자해 위기군) 자살예방센터 연계, 밀착 사례관리,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연계

- **공공병원** 중심 **수급자 특화 정신 건강사업** 도입·활성화

* 예: 방문간호팀-의료급여관리사-정신건강의학과 협업 통한 취약계층 정신질환자 아웃리치 모델 등

2 간병 및 재활·회복 지원 강화

○ **(간병) 의료·간병필요도 높은 입원 수급자**(예: 최고도, 고도 중 일부) 대상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27.下)

* 대상·수가·인력배치는 건강보험과 동일

○ **(재활) 지역책임의료기관** 및 **재활의료기관 중심*** 퇴원 후 수급자 **재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보상 연계 방안 마련**

* 지역책임의료기관(공공·민간) 55개소 + 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 71개소 참여

3 퇴원 후 재가 정착 지원

○ **(안정적 일상 복귀)** 퇴원 후 **연속적 재가 정착 지원체계** 구축

- **(재가의료급여 고도화)** 방문 건강관리, 도시락 제공 外 고립 방지를 위한 **사회참여** 프로그램, **생애 말기 케어** 등 확대로 재입원 최소화

- **(통합돌봄 연계)** 재가 의료급여 종료 후 **통합돌봄 연계 제도화 방안 마련***('27.下), 통합돌봄 체계 내 지역자원 활용한 **지속 돌봄 제공**

* 대상자 발굴·의뢰, 자원 공유, 공동 사례관리 등 지역 특성·여건별 연계 모델 개발 및 실증

○ **(주거 안정) 다양한 주거 선택지 제공,** 지역사회 복귀 기반 강화('27~)

- **(주거 보유) 주거급여** 통해 집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주거 미보유) 영구 임대,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신속 연계***

* 의료급여관리사 통해 퇴원 30일 전 장기요양 등급 신청 안내

1-3. [주거급여] 주거여건을 반영한 보장성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주거급여 선정기준) 선정기준**을 **지속 상향***해왔으나,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4~'26년)의 **상향 목표****에는 **미도달**

* ('15) 43% → ('19) 44% → ('20) 45% → ('22) 46% → ('23) 47% → ('24) 48%

**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단계적 상향 추진

- **지원대상**을 **상대적 빈곤선**(기준중위소득 50%)**까지 확대 필요**

○ **(임차급여) '26년 기준임대료**는 **제4차 계획 목표 대비 약 80% 수준**으로, **급지별** 비율 **격차***도 **존재**하여 이를 **해소**할 **필요**

* 제4차 계획 목표 기준임대료 대비 '26년 기준임대료의 급지별 비율(3인)은 1급지 82.0%, 2급지 79.6%, 3급지 76.8%, 4급지 71.1%로 격차 존재

○ **(수선유지급여) 공사비 재상승 추세**, 수급가구 증가에 따른 **대기물량 적체*** 등을 고려하여 **제도 운영체계 전반 점검** 필요

* 수선유지급여 수급가구는 약 2배 증가('16. 7.7만→'25. 14.4만)하였으나, 연간 수선공사 가능 물량(연간 2만호)은 한계, '26년 8.4만 가구 중 6.4만 가구 대기

- 또한, **폭염 등 이상기후**에 **대응**해 에너지 취약계층 **거주환경 개선 필요**

1 선정기준의 단계적 상향

○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26년 기준중위소득 48%**에서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추진

-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 가중, 실업과 소득 불안정 확대, 소득원 상실 등에 대비하여 **대상자 확대**를 통한 **주거안정성 강화 추진**

2 임차급여 수준 현실화

○ **(기준임대료 단계적 인상)** 임대료 증가 전망에도 불구, 최저주거 수준 대비 낮은 기준임대료 수준을 **시장임차료 수준으로 현실화**

- **기준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급지**의 **인상 비율 차등화** 등 추진

○ **(산정방식 개선**[중장기]**)** 현재 기준임대료는 3년 단위 재계측시 연도별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하여 **실제 임차료 증가율과 차이*** 존재

* 민간임대 거주 수급가구의 실제 임차료의 '15~'25년 동안 연평균 상승률은 5.6%이나, 주택임차료 지수(데이터처 소비자물가지수, 주택임차료 등)의 연평균 상승률은 0.8%

- 민간임대 거주 수급가구의 **실제임차료 변동**과 **상관성**이 **높은 임대료 가격지수 등**을 **활용**해, **시장 수준**에 맞춘 **기준임대료 산정** 검토

3 수선한도 현실화 및 제도운영 개선

○ **(수선한도)** 수선공사 후 자가주택 노후도 감소효과 제고를 위해, 자재비·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률과 연계하여 수선한도 적정성 유지**

○ **(수선주기)** 신규 수급가구 **대기기간 단축** 및 수선공사 **대기물량 적체 해소**를 위해 보수범위별 **수선주기**의 **조정 필요성** 등 **검토**

○ **(기준·방식) 현행 주택 노후도 개선 중심**의 수선방식에서 **기후위기, 초고령 사회** 등 전환기에 **대응 가능한 공사방식 전환** 검토

- 공사 시행 시 창호·단열 등 주택 **에너지 효율화** 및 **고령자 편의시설 설치** 기준·방식 등을 **개선**하고, **개선효과 평가·이력 관리** 추진

4 보장 범위 및 취약계층 보장 수준 제고

○ **(보장범위) 거주비용**으로 **지출**되지만 **임차료**에는 **포함되지 않는 관리비 등**을 주거급여 **지원항목**에 **포함**

- 구체적인 **보장범위**와 **지급기준** 등은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

* 관리비 지원 내용의 「주거급여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및 '28.1.1일 시행 예정

○ **(아동가구 보장**[중장기]**)** 수급 기준 충족 **비수급 아동가구 발굴**, 임차급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자기부담분 조정** 등을 통한 **제도 내실화** 검토

1-4. [교육급여] 최저보장 수준 · 범위 확대

【현황 및 문제점】

○ **(보장수준)** 교육활동지원비를 **매년 인상**하여 교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23년도 **최저교육비 대비 고등학교**는 **91% 수준**

- 교육활동지원비 인상에도 불구하고, 교육급여 수급자의 **지원 수준 적정성**에 대한 **만족도**는 **지속 하락**

○ **(최저교육비)** 교육급여 단가 책정, 적정성 평가 기준으로 기초생활 보장 실태조사 **최저교육비**를 활용 중이나, **적정 지표**로서 **한계**

- 교육환경 변화에도 불구, '04년부터 **동일 품목***, **특정 학년, 성별**을 기준**으로 계측하여 **대표성 미흡**(미계측 학교급 존재)

* 교재비(부교재비), EBS 교재비, 수련회(수학여행), 문방구비

** ('23) 표준가구의 중3 여학생, 고2 남학생 기준으로 계측(초등학생 미계측)

1 최저보장수준 단계적 확대

○ **'27년**은 **최저교육비**('23) 대비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이후 **최저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보장수준 단계적 상향 추진**

*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초·중), 교육급여 적정성 평가 연구(초·중·고)

2 최저교육비 개선 방안 논의

○ 현재 교육급여 적정성 평가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최저교육비'**의 한계를 보완하는 **'(가칭)적정 최저교육비*' 반영 검토**

* 최저교육비 포함 필요항목 1순위 : 학교에 납부해야 하는 교육비 ('26 한국장학재단)

- 표준가구에 포함된 특정 학년 자녀 기준이 아닌 **모든 학교급별**로 **전체 학년**에 **소요**되는 **품목** 및 **단가**(내구연수)에 대한 **교육비 계측**

2 제도 밖 빈곤을 줄이는 보호체계 강화

2-1. 부양의무자 기준의 실질적 폐지

【현황 및 문제점】

○ **(생계급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부분 폐지되었으나,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수급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부양능력을 확인하였으나, 이를 폐지하고 예외적으로 연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시에만 수급 제외

- 수급자 중 **장애·고령***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근로취약계층** 및 **과중한 부양 부담을 진 부양의무자** 등을 고려한 기준 개선 필요

* 특히 **후기 노인(75세~)**의 경우, 전기 노인(65세~75세)과 비교 시 **고용률 급감(39.5%→25.7%), 빈곤율 급증(19.8%→42.2%)** 등 **취약성 심화**

○ **(의료급여)**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격하고 복잡한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른 **비수급 빈곤층 존재**

▲ **(국정과제 77-1)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1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실질적 폐지

○ **근로취약계층 대상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예외규정**을 삭제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 폐지**

* 생계나 주거를 달리하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❶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우선 폐지**('27.下)

❷ **노인 가구**는 **초고령·독거 등 부양 필요도를 고려**하여 '30년 75세 이상 노인 가구까지 단계적 폐지 검토

○ 기준 폐지 효과 등 분석을 통해 그 외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소득·재산) 추가 완화** 검토 병행('29)

2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우선 폐지**('27.下)

○ **의료·돌봄 필요 높은 가구***에 대해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만 수급 제외**(現 생계급여 기준) 검토

* 검토 예시: 중증·희귀질환, 장기요양 1·2등급 노인 포함 가구 등

< (예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검토 방향 >

	현행	개선안(現 생계급여)
소득 기준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A×40%)+(B×100%)** * 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 차감·제외 (교육비+의료비+사적이전소득 등)	■ 年 **소득*** **1.3억 원 초과** * 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18%** * 재산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 기본재산액 (예: 서울 364백만원) - 부채	■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 A: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B: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 재산 소득환산체계 재설계 기반 마련

【현황 및 문제점】

○ **수급자 선정 시 재산을 처분**하여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수급 자격 및 급여액 결정('03년 도입)

* 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

- 주거용 재산 공제 도입('13) 및 공제액 상향, 기본재산액 인상('23), 자동차 기준 개선 등 **재산 산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했으나,

- 실제 현금화가 어려워 소득으로 활용할 수 없는 재산으로 인해 급여가 삭감되는 **소득환산제 자체에 대한 개선 필요성 지속 제기**

▲ **[단기] 재산 유형별로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중장기] 재산을 가상의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소득과 재산을 별도로 평가하는 체계로 전환 검토**

○ (1단계) 재산 유형별 산정기준 합리화 적용 검토('27~'29)

- 유형별 기준 개선방안 마련, 시뮬레이션 및 분석('27), 적용('28~'29)

❶ 자동차 **기준 단순화·합리화 : 단일 소득환산율 + 상한 적용 검토('28)**

- 배기량·연식·차량유형, 가구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환산율을 달리 적용하던 기준을 **차량가액 중심으로 단순화**하는 방안 마련

- 단, 국민 수용성과 제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정 가액 이상의 고가·사치성 차량은 별도 기준을 적용**하여 수급대상에서 제외

* 예: 기초연금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차량에 대해 별도 기준 적용

❷ 주거용재산 기준 완화 : 단계적 소득환산율 완화 검토('28~'29)

- 실질 생활 수준이 동일하다면 **주택·부동산** 가격 인상에 따른 수급 자격 및 급여액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환산율 완화 검토**('28)

-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까지 공제** 적용 검토

* 미국, 영국, 독일 등 국가에서는 실제 거주하는 주거용 자산은 전액 제외

** 주거용재산 소득환산 제외와 연계하여 주택연금 우선 활용 및 수령액의 소득 산정 방안 병행 검토(주택연금 가입 가능 여부, 가입 곤란 가구에 대한 예외 기준 등)

❸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 현실화 : 공제금액 인상 검토('28~'29)

- 10년째 동결 중인 생활준비금 공제수준을 **물가상승, 가구규모** 등 **예비적 지출 필요를 고려**하여 현실화 추진

○ (2단계) 재산의 소득환산제 대체모형 설계 ('29~'30)

- 재산의 유형별 환산율을 계속 세분화·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득과 재산을 별도로 평가하는 재산기준 체계로 전환 검토**

- 그간 재산 산정기준 개선에 따른 수급규모 변화 및 재정 소요, 빈곤율 감소 효과, 수급자 간 형평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반영

※ [참고] 공공부조 재산기준 관련 국내외 사례

○ **(영국)** 기본적으로 재산에 대해서는 **컷오프 방식** + **일부 소득환산** 적용

- 모든 재산에 대해 **동일한 환산율**(1.74%) 적용, 주거용 재산 및 본인 사용 자동차는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

○ **(서울형)** 4가지 유형(**소득, 전체 재산액, 금융재산, 자동차**)에 대해 **각각 컷오프 기준** 적용 → 모두 충족하여야 급여 대상자로 선정 가능

2-3. 신청주의 한계 보완을 통한 수급권 실현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직권신청)** 국가·지자체는 **수급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 가능**하나,

- 수급권자가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 신청 및 조사, 급여 지급 제한**

* 사회보장급여법 등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동의 없는 직권 신청을 규정하며, 수급권자의 서면 동의 없이 금융재산 조사가 어려워 지급 제한

○ **(대상자 발굴)** 선정기준 상향에도 불구, **정보 부족 및 절차의 복잡성**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비수급가구 적극 발굴 필요**

< 대통령 말씀('25.7) >

◈ "**복지 사각지대로 인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청해야 움직이는 「소극 행정」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 행정」 필요**"

1 생계급여 직권신청 방안 마련

○ **위기 상황**에 처한 수급권자의 보호를 위해 국가·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동의 없이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27)

- 직권신청의 **대상자 범위*, 금융정보제공 동의, 담당공무원 면책·인센티브 등** 법적 기반 및 업무매뉴얼·교육 등 세부 시행방안 마련

*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의 경우뿐만 아니라,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범위 확대

- 직권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가구 중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탄력적 보호 강화('27)

* 직권 신청 중 주요 탈락 사유 분석을 통해 지생보 심의 근거 마련

○ 수급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사람 등이 기준 개선 등으로 수급이 가능해진 경우 신청 안내하도록 방안 검토('28)

2 주거급여 대상자의 선제적 발굴 체계 마련

○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보유정보를 활용하여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주거급여 **신청간주 후 조사** 또는 **간편신청 절차**로 **개편 추진**

- **타 급여 수급자격** 및 **신청정보**를 **활용**하여 수급자격을 자동 확인하거나, **복지멤버십**을 **활용**한 **맞춤형 안내** 등 선제적 발굴 추진

3 교육급여 대상자 조기 발견·연계 지원

○ **(조기 발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제적 취약 학생을 **학교·교육청** 단위에서 **선제적 발견·지원**

* (**학교 내**) 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학생 논의·선정 절차 마련
(**교육(지원)청**) 16개 시도, 176개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통합지원

2-4. 빈곤 진입 예방을 위한 긴급복지의 위기안전매트 기능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벗어나도록 **긴급복지** 지원 중이나,

- 배달플랫폼 등 **불안정한 노동**과 자영업자의 휴·폐업 등 **돌발적 소득 상실 위험**이 일상화되어 **지원확대 필요성** 증가

- 긴급복지 담당공무원이 **시군구당 평균 약 1.7명***에 불과하고, **타 업무 겸무가 67.1%**로 내실 있는 **현장확인·상담 등 한계**

* 시군구당 1명 62.5%, 2명 20.3%, 3명 9.1%, 4명 이상 8.1%

○ **(우선드림) 즉각적인 위기상황 해소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읍·면·동에서 소액**(30만원)을 **즉시 지급**하는 **우선드림 신설**

* 일용직·단기 근로에 채용되었으나 출퇴근 교통비나 현장 작업용 필수 장비를 구매할 여력이 없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경우 등

○ **(위기 예방·회복 지원 확대) 양극화 심화**로 인한 서민·중산층의 **경제적 취약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복지*** **등 제도 개선 검토**확대

- **(소득기준)** 현 **기준 중위소득 75%**에서 확대하여 **일시적 경제 충격에 취약한 가구**까지 **보호**하는 방안 검토

- **(일반재산 기준)** 실제 **거주 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재산 기준을 주택매매 중위거래가의 일정 수준으로 확대 검토**

* 가계 총자산의 70%(1주택소유자) 또는 90%(전월세 임대가구)가 거주 주택이고 거주 주택은 즉시 처분하여 유동성 확보 어려움 등을 고려

- **(금융재산 기준) 생활준비금**(현행 기준 중위소득 100% 수준)을 확대하는 등 **금융재산 기준 상향** 검토

○ **(전달체계 개선) 대상자 접근성과 현장 확인·지원**에 보다 유리한 **읍·면·동 중심의 전달체계** 및 **사업 간 연계** 강화 검토

- 긴급복지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반복**되는 수급 가구*에 대하여 통합사례관리 연계 등 **사후관리 강화** 추진

* 지원 종료 시 ①위기상황 지속, ②복합적 위기상황의 발생, ③반복지원 이력 등을 고려하여 지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읍·면·동에 긴급복지담당공무원을 우선 배치**하여 신속한 대상자 발굴 및 현장 확인 등 **현장 대응력 제고**

- 긴급복지 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 분석 및 욕구사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부처별 서비스* 연계 추진** 검토

* 고용부(국민취업지원제도), 국토부(LH 매입·전세임대), 성평등부(양육비 선지급), 금융위(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 대한법률구조공단(개인회생·파산 등 소송구조 지원) 등

2-5. 연속적 의료안전망 구축

【현황 및 문제점】

○ 혜택이 큰 의료급여는 탈수급 부담이 커 **근로의욕 저해,** 자립 기반 마련 시까지 보장 유지하여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필요

* '23년 대비 '25년 연간 탈수급자 3만명 감소

○ **의료급여 外 의료안전망**(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등) **대상 제한적,** 제도 확대를 통해 취약·위기 계층 **빈곤 추락 방지** 필요

○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간 **분절·격차 존재,** 이로 인한 **실질적 의료 접근성 제약** 및 **형평성 저하** 발생

○ **(자립이행 특례) 근로·사업소득 증가**해도 **일정 기간**(예: 3년) **자격 유지 지원*** 검토, 자활 가능성이 높은 대상(예: 청년)에 시범적용 검토

* (美) 취업 후 소득 발생하더라도 일정 기간 메디케이드(Medicaid) 혜택 연장

- 수급자의 **일자리 유형**에 따른 **탈빈곤 이행 지원 사각지대*** **해소,** 성과평가 후 대상자 확대 검토

* 자활사업 소득 초과 시 5년 자격 유지 vs 일반 근로·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소득 초과 시 자격 상실

○ **(취약계층 지원) 의료급여 밖 취약계층 포괄**하는 **의료안전망 구축**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을 통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확대 검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연계

○ **(건강보험과 격차 해소)** 건강보험에는 있으나 의료급여에는 없는 제도 도입·연계로 **수요자 관점**에서 **제도 간 분절·격차 해소**('27.下~)

-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다제약물 관리사업**, 모바일 건강관리(건강보험 25시 앱) 등 도입 추진

3 근로를 통한 실질소득 증대 및 자립기반 강화

3-1. 수급자 대상 근로유인 및 자립지원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저소득 **청년이 20대에 학업, 취업준비, 안정적 일자리로의 이행 등을 통해 안정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최저생활 보장 필요

○ 중장년층에 대한 자립 기반 지원 미약, 특히 **자활 참여자** 중 **40~60대 중장년 비중이 80%를 차지**하나, 중장년 특성을 고려한 **별도 자활지원모델 개발 부족**

○ **빈곤 취약도가 높은 대상**에 대해 일을 통한 소득 보완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필요

1 청년 대상 최저생활 보장 및 자립 기반 강화

○ **(생계급여 직접 지급)** 수급가구 청년이 부모 등 가구원과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본인 몫의 생계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 검토('27)

- 가구단위 보장 원칙 下 지원 요건 구체화를 통한 시행방안 마련, 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모니터링 등 추진

< (예시) 생계급여 분리 지급 개념도 (3인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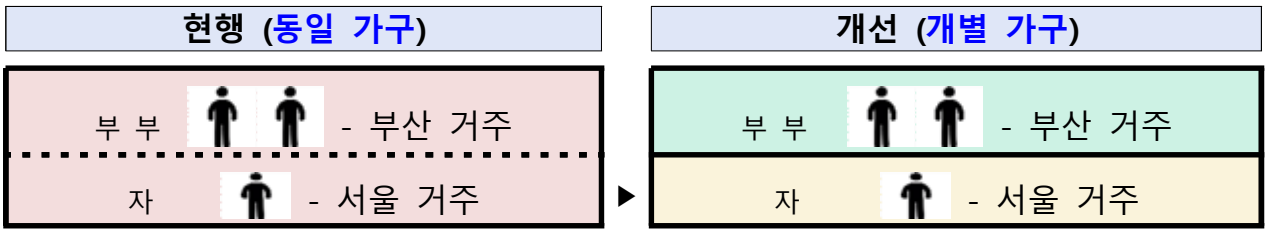

보장단위	3인가구	2인가구, 1인가구 각각
급여수준 ('27년 기준)	1,829,789원 (부모 중 1인에게 지급)	1,433,806원(부모 중 1인에게 지급), 875,533원(자녀에게 지급)

* 부, 모, 자 모든 가구원이 소득·재산이 없는 경우를 가정함

○ **(근로유인)** 자립 지원 위해 **근로소득 공제 등 근로활동**을 통해 증가한 소득과 **자산형성지원의 연계** 방안 검토

○ **(특화 자활지원) 도시형 지역자활센터 중심 참여자 확대**, 인턴처 발굴 확대 및 DB 구축, 상담·자립계획 수립·역량 강화 등 맞춤형 지원 강화('27)

2 중장년 근로 유인 및 참여 지원 강화

○ **(근로소득 공제)** 노동시장 이탈로 인한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노동시장에서 최대한 머물도록 근로소득 **추가 공제 검토**('28)

* 現 근로·사업소득의 30% → (예) 20만원+30%

○ **(특화 자활모델 개발)** 참여자 욕구와 직무경험, 특성을 파악하여 **중장년 특화 자활근로 모델* 개발**('28) 통해 민간시장 취·창업 확대

* (예시) 시설관리·환경정비 등 공동작업형 업종, 1인가구의 지역사회 참여형 사업단 모델 등

3 생계급여 수급 노인의 일자리 참여기회 확대

○ **생계급여 수급 노인**에 대해서도 **공익활동형* 참여 허용 검토**

* 자원봉사 개념의 활동으로 사회참여·고립예방·건강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노노케어, 아동·청소년 돌봄, 지역사회 환경개선 등 프로그램 수행

- 기존 참여 노인과 생계급여 수급 신규 참여자가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발기준** 및 운영절차 마련

3-2.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자활사업 **참여자는 '25년 63,950명**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상대적 고역량자를 보낸 이후('14~) **최대 수치**를 기록

* '17년부터 8년간 참여자 수가 1.5배로 증가

○ **(문제점)** 자활사업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참여자의 탈수급 및 취·창업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자활성공률은 지속적으로 감소**

* 자활성공률 추이 : **('18) 33.7% → ('20) 25.9% → ('23) 24.8% → ('25) 18.0%**

- **고령자*, 근로능력 미약자, 정신건강 문제 경험자 등 단기간 내 취·창업이 쉽지 않은 참여자 비중이 증가**

* 50세 이상 참여자 비중 : ('18) 52.6% → ('20) 58.7% → ('24) 61.5% → ('25) 67.2%

▲ **(국정과제 77-1)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마련 등 탈수급 지원 강화**

○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 자활역량·의지·환경에 따른 **참여자별 자활목표 구분**과 **목표별 집중지원**을 통해 **자활지원 효과성 제고**('28)

<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방향 >

<table>
<tr><th colspan="3">현 재</th><th rowspan="2"></th><th colspan="3">개 편(안)</th></tr>
<tr><th>사업단 유형</th><th>배치 기준</th><th>자활 목표</th><th colspan="2">사업단 유형</th><th>배치 기준</th><th>자활 목표</th></tr>
<tr><td>시장진입형</td><td rowspan="3"><u>역량과 관계없는 배치</u></td><td rowspan="3">경제적 자활
* 자활성공률 (취·창업)</td><td rowspan="3">➡</td><td rowspan="2">자립 도전형</td><td>창업 도전형</td><td rowspan="2">근로 능력, 자활 의지 양호</td><td rowspan="2">경제적 자활
(자활성공률)</td></tr>
<tr><td>인턴형</td><td>취업 도전형</td></tr>
<tr><td>사회 서비스형</td><td rowspan="2">자활 준비형</td><td>사회 서비스형</td><td rowspan="2">근로 능력, 자활 의지 낮음</td><td rowspan="2">사회적 자활
(자립의지 변화, 사회통합도 등)</td></tr>
<tr><td></td><td></td><td>근로 준비형</td></tr>
</table>

* **(사회적 자활)** 자활의지 향상, 사회참여도 증진 등 자활참여를 통한 개인적·사회적 성과 제고

○ **(맞춤형 목표 설정)** 참여자 **근로역량과 자활의지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자활(취·창업)과 사회적 자활(자활의지 제고, 사회 통합)**로 구분

- **(경제적 자활) 자활 의지, 능력 등이 양호한 참여자**는 단기간 내 **취·창업, 탈수급** 등 경제적 자활을 목표로 설정

- **(사회적 자활) 자활 의지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참여자**는 **자활의지 제고, 개인 역량 강화, 사회 통합** 등 사회적 자활을 목표로 설정

○ **(역량별 사업단 개편)** 참여자의 역량과 자활 목표(경제적/사회적 자활)에 적합한 자활지원을 위해 사업단 유형도 **자립도전형/자활준비형**으로 개편

- **(자립도전형) 취·창업, 탈수급 등 경제적 자활**을 목표로 하는 사업단 유형으로, 자활 경로에 따라 **취업도전형** 또는 **창업도전형**으로 구분

- **(자활 준비형) 자활의지 제고를 목표**로 하는 사업단 유형으로,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을 기본 유형**으로 하되 **하위 단계의 근로준비형**도 운영

○ **(배치비율 설정)** 법률상 사업 목적인 **탈수급 자립 성과의 최소한도 확보**를 위해 **사업단 유형별 배치 인원 비율*** **설정**

* 최근 5년간 평균 자활성공률(24%)을 고려하되, 지역 유형(도시/도농/농촌) 및 센터별 참여자 규모와 역량에 따라 차등 조정

○ **(유인구조 설계)** 개편 자활지원체계에 **자활사업 참여자**와 **지역자활센터**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구조 마련

○ **(단계적 추진) 충분한 시범사업 기간** 확보, 적용 지역자활센터 확대, **시범사업 평가 및 현장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단계적 개편 추진

<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단계적 확대 계획 >

1차 시범사업 ('26.7~12월)		**2차 시범사업** ('27.1~12월)		**전면 적용** ('28년~)
50개소	➜	**100개소**	➜	**251개소 (전 지역자활센터)**

3-3.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탈수급 유인 확대

【현황 및 문제점】

○ **(자산형성지원) '22년 사업 개편**을 통해, 희망저축계좌 Ⅰ, 희망저축계좌 Ⅱ, 청년내일저축계좌의 3가지 통장사업 운영 중

< 기준 중위 소득구간별 가입 통장 종류 구분 >

기준 중위소득 / 통장종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차상위 (~50%)
희망저축계좌 Ⅰ				
희망저축계좌 Ⅱ				
청년내일저축계좌(만15세~39세)*				

* '26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만 신규 가입 가능

-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하여 기초생활보장 **탈수급하는 경우에도 추가 지원금이 없어 탈수급 유인기제**로 작동하기에 **미흡**

- **저소득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는 사업 목적에도 불구하고, 소득·자금 문제 등의 사유로 **중도 해지***하여 지원금 수령자격 상실

* '22년 가입자 중 42,465명 중 8,492명(20.0%)이 중도 해지

○ **(가입규모 확대)** 사업 성과평가 과정을 거쳐 **가입자 규모 확대 검토***('28)

* 희망저축계좌Ⅰ(생계·의료 수급자 '27년 2.9만명), 청년내일저축계좌(15~39세 수급·차상위 가구 청년 '27년 2만명)

○ **(탈수급 지원금) 희망저축계좌Ⅰ과 청년내일저축계좌**(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정) 가입자 대상 **탈수급 지원금 지급** 검토

○ **(추가 적립금)** 희망저축계좌Ⅰ·Ⅱ 가입자 대상 추가 적립금 지원 검토

○ **(청년 중도해지 방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청년들이 **중도해지 없이** 안정적으로 **만기 지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27)

- 청년들의 소득·현금 상황을 고려하여 **본인 적립요건 완화방안 검토**, 가입자 대상 **사례관리체계 강화**, 계좌 압류·가압류 시 **특별적립중지 허용** 검토

3-4. 자활기업 지원을 통한 자립지원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자활기업)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조합,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수급·탈빈곤을 위해** 자활기업을 설립·운영

* '25년말 기준 자활기업 총 977개소, 종사자 9,613명

- 자활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전환하여 **창업**하는 숫자가 **감소 추세**이며, 이에 따라 **전체 자활기업도 정체 상태**

* (창업 자활기업 수) ('21) 76개 → ('23) 66개 → ('25) 59개

- '25년 기준 자활기업의 57%가 집수리, 청소, 배송 등 **단순 노동집약적** 업종, 5인 미만의 **영세한 기업**이 61.5% 차지

○ **(창업지원 강화)** 향후 **5년간 자활기업 창업 총 500개**를 목표로, 자활기업 **초기 창업자금 지원**과 **창업 컨설팅**을 확대('27)

- **예비 자활기업*을 재도입**하여 초기 지원을 강화하고, **전국·광역단위** 모델 등 **규모화**가 가능한 **사업모델을 개발, 법인화·프랜차이즈화 추진**('27)

* 사업비 대비 매출이 많이 발생하고 창업 가능성이 높은 자활근로사업단을 심사·지정하여 창업 인센티브(예: 사업단 매출액의 20% 적립 후 창업 후 일괄 지원)를 추가 지원

○ **(사회적 가치 창출 강화)**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지원 강화**, 사회연대경제조직들과의 **통합 판로지원 시스템 구축**('27)

○ **(홍보 강화)** 자활기업의 기능·역할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자활기업 생산품 공동브랜드 마련·홍보('27)

< 자활기업 지원 추진 방향 >

자활기업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자립 경로 구축

창업 단계	성장 단계	성숙 단계
· 초기 창업자금 지원 및 창업 컨설팅 확대 · 예비 자활기업 재도입 · 사업 모델 신규 개발·보급	➡ · 전국 자활기업 추가 설립 · 광역형 사업모델 마련 · 법인화 및 규모화 지원 · 프랜차이즈 운영	➡ · 사회적 가치 창출 강화 · 통합 판로지원 · 대국민 인지도 제고 · 공동 브랜드 마련

4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합리화 · 효율화

4-1. AI · 데이터 기반 급여업무 관리 고도화

【현황 및 문제점】

○ **복지대상자 규모가 증가**하고,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잦은 자격 변동 등으로 조사·확인 등 급여관리 **업무와 현장 부담 지속 증가**

- 특히 공적자료의 생성·연계 시차, 자료의 불완전성 및 변동성 등으로 **과오·부정수급**뿐 아니라 **반복적인 소명·확인 업무**를 유발

○ 소득·재산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는 동시에 **행정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

- **생성형 AI 기반**으로 **맞춤형 상담** 지원('27) 및 고립·위기아동 등 복합 위기 대응을 위한 **위기가구 통합발굴 플랫폼 구축**('28~)

- **신청→조사→결정→지급→사후관리 등 全 단계에 AI를 활용**하여 수급자가 개별 제출하는 증빙자료의 연계·분류 및 정합성 검증 지원('29)

- 사후 적발·환수 중심의 급여관리에서 벗어나, 급여 과오지급 및 자격 변동 가능성을 사전에 감지·확인하는 **예방적 관리체계 강화**

< 급여업무 단계별 AI 적용방안(안) >



4-2. 필요한 의료보장 강화 및 과다이용 유발 구조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미충족 의료) 2·3차 진료 접근성 제약, 건강보험과의 보상격차** 등으로 수급자 **미충족 의료*** **발생**

* 미충족 의료 경험률 11.5%, 건보 가입자보다 1.5배 높고, 치료(10.4%), 검사(12.4%) 미충족 높음

○ **(과잉의료)** 공급체계에서 유발되는 **과잉의료**에 대한 **관리 기전 미흡**

○ **(과소·과다이용)** 의료적 필요도 대비 **과소·과다 이용 발생**

- 외래 **상위 1%가 외래 총진료비 15% 차지**, 다빈도 이용은 경증 비중 높고 정신질환, 비의료적 요인과 공급 측면 요인 복합 작용
- 10종 이상 **다제약물 복용자**가 **26.3만 명**에 달하나, **다제약물 처방 조정** 및 **통합적 복약 관리**는 **미흡**

1 실질적 의료접근성 제고

○ **(중증·필수 진료)** 생명·건강 직결된 전문진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공병원, 공공기능 민간병원의 2·3차 진료 활성화**

- 단순 수급자 진료 실적을 넘어 통합적·완결적 치료를 위한 **의료급여 진료·진료협력 평가** 및 **성과 보상 강화**('28~)
- **희귀질환 아동, 중증·복합질환 관리** 등 의료급여 **수급자 특화 공공사업**(예: 책임의료기관 협력사업) 활성화('28)

○ **(적정 보상)** 입원환자 **식대***는 **건강보험 수준 단계적 인상**('27~), **외래 혈액투석**** 등 지속 관리항목 **수가 개선**하여 **의료 質 제고**

* 일반식, 건강보험 의원급 수가 대비 90% 수준('25), 특수식은 건강보험 의원급 수준 인상 완료('26.1.)

** 외래 혈액투석은 건강보험 수가 대비 79% 수준('24)

2 공급 측면 과잉 의료 관리

○ **(외래) 경증 과잉 항목 집중 모니터링** 및 **급여기준 강화**('27.下~)

< 항목별 의료급여 자격 시 평균 진료비·수가 개수 변화 >

항목	대상자	기관명	자격변동	의료급여 자격 시	
				평균진료비	수가 개수
물리치료	김00 (57년생, 관절통)	잠실**의원	건보 → 의료급여 1종	+ 37,825원	2.5배
신경차단술	김00 (53년생, 요통)	하나**의원	의급 2종→건보→1종	+ 64,301원	2.0배
한방시술	김00 (46년생, 사지통증)	한*한의원	의급 1종 →건보	+ 18,561원	2.4배

○ **(입원) 사회적 입원·회전문 입원 방지**를 위한 **심사·관리체계 개선**('27.下)

○ **(조사·심사) 기획 현지 조사 대폭 확대** 및 **분석심사 강화**('27.下)

- **AI** 기반 **부당 청구 감지 시스템** 구축 추진('27~), **부적정·불법 사례 신고센터 운영**('27) 및 **포상금** 활성화

3 과소·과다 의료 이용 방지

○ **(과소 이용 방지)** 입원 필요자·치료단절자 발굴을 통해 **단기 입원, 회복** 및 **퇴원 후 관리**('27)하여 **증상 악화·장기 입원 방지**

○ **(과다 이용 관리) 이용일수 관리 개편*** 통한 **과다 이용 핀셋 관리**

* 일률적 외래+입원+투약일수 합산 관리 → 외래·입원·투약 분야별 체계적 관리, 실효성 낮은 연장승인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개편

- **(외래) 외래 이용 180일 초과**(상위 2%) 시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이용*, **300일 초과**(상위 0.3%) 시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27.下)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을 약 19.4만 명 → 3.2만 명으로 선택집중, 건강관리 및 사례관리 강화

** (現) 외래 이용 365일 이상 본인부담 30% → (改) 외래 이용 300일 이상 본인부담 30%

- **(입원) 퇴원환자 지원체계 확충** 연계 **사회적 입원 관리**방안 마련

- **(투약)** 과다 복용 우려자 **다제약물 관리 사업*** 시행

* 10종 이상 약물 120일 이상 복용 만성질환자(26.3만명), 약물평가·복약점검·상담·모니터링 제공

4-3. 급여별 인프라 정비 및 전달체계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자활급여) 중앙-광역**센터 간 **역할 구분 미흡**, 지역센터 간 **지역유형별 차이가 고려되지 않아, 종사자 이직률이 높고 처우 열악**

- '자활성공률'만 성과로 제시되어 자활사업의 **사회적 성과 제시 한계**

○ **(의료급여) 중앙·공급자 중심** 정책 결정구조, **의료급여 관리사 개인**에게 **의존**하는 **전달체계**로 적극적 건강관리 한계

○ **(주거급여)** 수급가구 거주주택의 **주거환경 열악***, 수선공사 후 하자 발생과 보수 지연 등 **공사수행업체**의 **역량** 및 **품질관리 제고 필요**

* 임차급여 수급가구 경우 방수·난방·단열·위생 등이 상대적 미흡('24. 주거실태조사)

- 또한, **주거급여 조사 중심**의 **전달체계**는 지자체와 연계한 타 복지상담 및 정보제공이 원활하지 않아 지역단위의 **통합적 지원**에 **한계**

○ **(교육급여)** 바우처 제도의 안정적 도입에도 불구, 여전히 **교육급여**와 **바우처 이중 신청 구조**에 따른 **바우처 미신청자*** **발생**

* ('23) 16,001명(4.8%) → ('24) 12,074명(3.7%) → ('25) 8,618명(2.6%)

1 자활지원 전달체계 정립 및 성과 측정 개선

○ **(전달체계 정비)** 자활 효과성 제고를 위해 자활지원 전달체계 정립, 농촌형 자활센터 기능 개편,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추진

- ① **(중앙-광역-지역 전달체계 정립)** 한국자활복지개발원(중앙) 및 광역센터의 **위상·역할 정립**하여 성과평가 체계 구축 및 자활 지원 활성화('28)

- ② **(농촌 지역자활센터 기능 개편)** 도시-농촌 간 사업여건, 참여자 구조 등을 분석하여 기능 개편방안 검토(지역 내 복지 거점 인프라로 활용 등)('29)

- ③ **(종사자 처우개선)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상향**('27. 100%) 및 소진 예방 교육 강화('27), 비정규직 종사자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28)

○ **(사회적 성과 지표화)** '자활성공률' 外 **빈곤 완화, 필수서비스 제공, 참여자 사회통합** 등 사회적 성과 측정 필요

-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회적 배제 완화 정도, 자활사업의 사회적 기여도,** 고용창출 등 **사회 전반적 편익 창출** 등 3가지 측면에서 **지표화 추진**('29)

2 의료급여 전달체계 확충

○ **(의료급여심의위)**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균형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구조로 중앙·지방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역할 개선**('27)

* 지방정부, 시민사회 등 참여 확대로 사회적 논의 기능 강화, 당사자 자문 도입

○ **(지방정부) 보장기관**으로서 **지방정부**의 **권한·책임 강화**

- **예방·관리·재가** 중심 **지자체 평가·결과 공표, 인센티브 강화**('27)

- **시·도 관리·운영책임 강화*** 및 **시·군·구 보장기관 역할 확대**('27)

* (現) 기금 관리, 예산 확보, 시·군·구 재정 운영 지도·점검 등 재정관리 업무 국한
→ (改) 광역 단위 사업 기획, 의료협력체계 구축·운영, 시·군·구 간 자원 배분·조정·평가 등

○ **(의료급여관리사) 건강관리 매니저**로서 **역할** 정립 및 **전문교육** 강화, **인력 확충**(676명 → 982명) 및 **처우 개선, 업무 효율화**('27~)

○ **(건강보험공단) 데이터 관리체계 개편·운영**('28), **사례관리 지원** 등 의료급여 운영·지원체계 내실화

3 주거급여 품질 관리 및 성과 평가·모니터링

○ **(주택 품질관리) 임차급여 수급자 거주주택**에 대한 **최소한 거주 품질기준 마련** 및 주택조사 반영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연계**

- **중장기적**으로 **임대인**의 **주택 품질기준 준수의무 부여** 및 **임차급여**의 **조건부 지급** 등과 연계하는 **제도개선 검토**

○ **(수선유지 품질 제고)** 수행업체의 **안전교육 및 사업수행평가**를 통해 공사품질을 향상하고, 공사이력·하자처리 등을 **시스템**으로 **종합 관리**

○ **(거버넌스 구축**중장기**)**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모바일 비대면 조사**, 주택정보 연계 및 알림 등 **수급자 중심**으로 **업무·서비스** 전반 **효율화 추진**

- **지자체** 등과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수급가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서비스 연계** 등 **추진**

○ **(성과관리**중장기**)** **주택조사** 및 **수선이력**을 **가구·주택단위 데이터**로 **구축, 주거상향 지원** 및 **사후관리, 체계적 주택품질 개선** 추진

-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 관점**의 **질적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한 **정책효과**를 **상시 모니터링· DB화** 추진

4 교육급여 절차 개선 및 성과 관리·환류

○ **(신청절차 개선)** 이중신청 절차에 따른 미신청자 해소를 위해 **교육급여**(읍면동)-**바우처**(장학재단) **동시 신청** 실시('28 신규수급자부터 적용)

* 교육급여 신청시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동의하도록 개선

< 교육급여 신청 절차 개선(안) >



○ **(다국어 매뉴얼 마련)** 이주배경 학생 증가에 따라 **외국인 부모**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다국어 매뉴얼 제작** 및 **제공**('27~)

* (現) 영어 → (改)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 **(성과관리)** 수급자 대상 **정기**(매년)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 효과와 체감도를 점검하여, **정책 성과 체계적 관리** 및 제도 개선에 **환류**

[추진방향 2] 기초생활보장의 미래지향적 발전체계 구축(중장기)

◇ 앞으로의 3년은 제도 자체의 지속적 발전과 더불어, 인구구조·사회환경 등 **시대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

○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최후의 안전매트로서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 **대상별·욕구별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하는 동시에, **탈수급 지원제도**로서 **자활사업**의 **지속가능성**도 **재검토**

1 사회보장체계 내 기초생활보장제도 역할 재정립

【검토배경】

○ '15년 이후 근로빈곤층 대상 근로장려금(EITC)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노인 대상 기초연금 인상 등 공적소득보장제도 확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의 공적소득보장 미수급 비율은 5.7% 수준

○ **여전히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이 **존재**하는 가운데, 다양한 공적 소득보장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최후의 사회안전매트**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 및 보장범위 재정립 필요

○ **(기본방향) 생계급여는 최후의 안전매트**로서 기본적인 소득보장 기능을 유지하되, **대상별 특성에 따른 소득보장 내실화 방안 마련**

- 노인·장애인, 아동·청년, 근로빈곤층 등 대상별 특성, 현행 제도·보장수준, 제도간 정합성 분석 → 개편 필요성 및 제도화 방안 검토

※ [예시] ① (근로빈곤층) 근로능력 유무를 토대로 생계급여는 근로 취약계층만 보호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은 별도의 보장제도 마련 필요 여부 중장기 검토
② (근로 무능력 계층)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연령특성에 맞는 대상별 공공부조 제도를 확대, 생계급여는 최종적 최저생활보장 기능 수행하는 방안 병행 검토

○ **(추진방식)**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하되, 관련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조정 필요 사항은 사회보장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협의

2 저소득층의 기본적 욕구 보장 강화 및 급여별 운영체계 개편

【검토배경】

○ '15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욕구별 보장**을 강화해 왔으나, 급여별 **보장수준의 적정성** 및 관련 **정책 체계와의 정합성**에 대한 **종합적 점검 필요**

*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간 보장체계의 분절 및 격차, 주거급여와 주거정책, 교육급여와 시도교육청 교육비 지원사업 등 급여별 정책 체계와의 연계·조정 필요성 등

○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목적을 유지하면서, **급여별 역할 및 운영체계 재검토** 추진

○ **(검토방향)** 빈곤층의 욕구별 보장 강화를 위해 급여별 보장방식 및 운영체계 개편 검토

① **(생계·주거급여) 현금성 급여로서** 빈곤층의 기본적 생활유지를 위한 **최후의 소득보장 기능** 유지하되, 관련 제도 간 정합성 제고

② **(의료급여)** 빈곤층의 **건강한 삶 보장** 목표로 **의료빈곤 방지** 및 **건강 악화 경로 차단**을 위한 **적극적 건강보장체계**로 전환

- 소득 수준에 따른 가구 단위 수급권을 토대로 **개인의 의료필요도에 따른 맞춤형 급여체계**로 발전

-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간 분절·격차 해소**를 바탕으로 양 제도 간 연계 강화 및 중장기 관계 정립 모색

③ **(교육급여) 저소득층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면서 **시도교육청 교육비 지원 사업**과 **연계·내실화**

④ **(자활급여)** 최근 참여자 증가규모·속도 및 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여 **사업 효과성 유지가 가능한 적정 규모 도출**

* 참여자의 특성, 자활성공 가능성, 인프라 현황, 자활사업단 여건 등 종합적 검토

- 사업의 **효과성 유지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조건부과 및 근로능력평가 체계 개편, 인프라 확대 등 중장기 방안** 제시

3 인구구조 및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재설계

【검토배경】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단위 보장, 보충성 원칙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 최저생활 보장 등을 기본원칙으로 운영**

○ 그러나, 1~2인 가구 증가, 저소득층 자산격차 심화, 자동차 등 재산의 생활필수재 성격 확대 등 **사회 구조·환경 변화**

*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급여기준을 전환한 이후, 중위소득 변동 등을 고려한 최저생활 보장기준의 적정성 점검 필요

○ **인구·사회환경 변화와 저소득층의 생활실태를 반영**하여 보장단위, 소득·재산 산정방식 및 최저생활 보장기준 등 **제도 운영원칙 재검토** 추진

○ **(가구 특성을 고려한 보장단위 개선)** 가구 형태의 변화를 반영하여, **개인·부부 등 다양한 생활단위를 고려한 보장단위 개선 검토**

* (영국) 개인 또는 커플을 기본단위로 지급, (독일) 가장을 급여지급률 100%로 하고, 가구원별 급여수준(60~90%) 적용, (호주) 근로연령층을 독신/커플로 구분

○ **(소득·재산 산정체계 합리화)** 타 부처·지자체 등 지원 확대에 따라 **제도 간 정합성**을 고려하여 제도 주요 원칙 재정립

- **(재산의 소득환산체계 개편)** 실제 가처분소득을 중심으로 최저생활 보장 수준을 판단하도록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선정체계 마련 검토

* (검토방향) 소득과 재산을 별도로 평가하는 재산기준 체계(컷오프방식)로 전환 검토

- **(공적이전소득 공제방식 개선) 대상자별로 추가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기준 마련(예. 대상별 추가지출 범위 한도 설정 방안 등)

○ **(최저생활보장 기준 재설계)** 기준중위소득, 최저생계비 외에 **생계급여 보장수준 적정성 평가 기전* 마련**

* 최소생활 및 통상적인 생활수준의 생계비, 실제 저소득층 지출현황 등 고려

- **(기준 중위소득 산정 개편)** 정책적 빈곤 기준선으로서 기준 중위소득의 의미 및 산정방식 재검토

Ⅵ 추진 체계

1 기본계획 이행 및 평가

○ **(연차별 점검)** 기본계획 과제별 **진행상황 및 추진실적 정기 점검**

- 법령 개정, 제도 시행 등 주요 이행단계를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추진여건 변화가 있는 경우 향후 계획을 함께 점검

○ **(주요 성과 확인)**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정책효과와 영향도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반영

* 수급자 규모, 신규 수급 및 탈수급 현황, 빈곤 관련 지표, 급여수준 등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보고)** 이행상황, 주요 성과, 중장기 과제 논의 상황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보고

- 특히, 중장기과제는 소위원회 등에서 기초분석과 쟁점 검토를 선행, 중생보에서 향후 추진방향, 보완 필요사항 등을 단계적으로 논의

2 정책대상자 및 의견 수렴 체계화

○ **(정책대상자 의견수렴)** 주요 제도개선 과제 검토 시 수급자·비수급 빈곤층 등 정책대상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

- 정책대상자의 의견을 정기간담회·FGI 등을 통해 균형 있게 수렴

○ **(현장 의견수렴)** 지자체 등 일선 현장의 제도 운영상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적극 수렴

- 現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핵심요원 참여 기반으로, 제도 개편 시 영향도, 집행가능성을 사전검토하고, 현장 모니터링 실시

3 중장기 과제 검토를 위한 논의 구조 마련

○ **(기획단 구성 운영)** 중장기 과제의 실효성있는 논의를 위한 **가칭 기초생활보장 미래 기획단 구성·운영**

- 중장기 과제로 제시된 각 세부 과제별로 분과를 구성, 과제 검토·분석 및 논의 실시

- 정책대상자 및 현장의 의견 수렴 채널도 병행 운영

< 가칭 '기초생활보장 미래 기획단' 구성·운영(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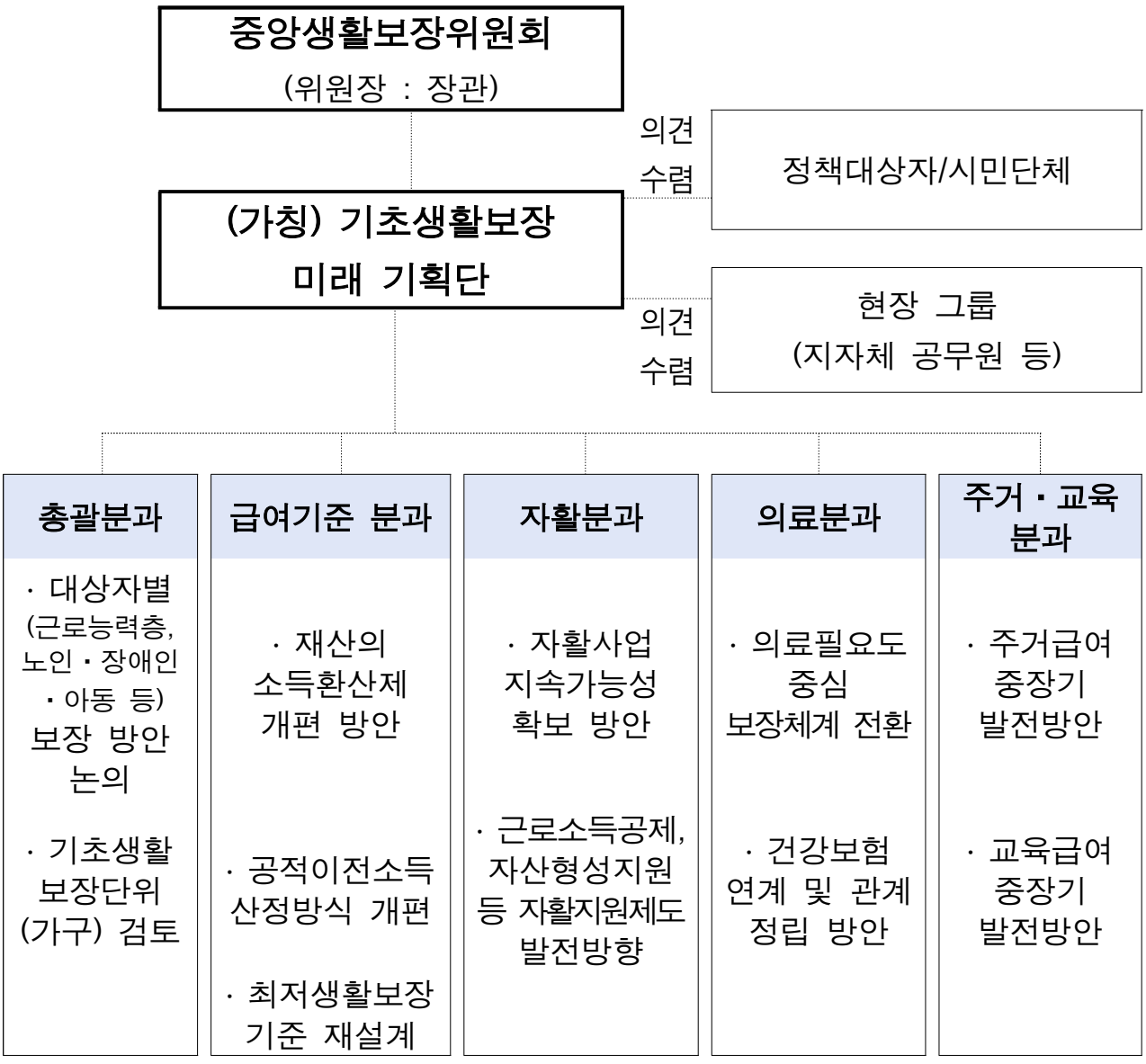

Ⅶ 향후 추진계획

□ 추진 일정

○ **급여별(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 기본계획 수립**: ~'26.9월

○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마련**: ~'26.10월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26.11월

□ 입법 조치

○ 세부 추진과제별 **법 제·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고시 등 제·개정** 추진

□ 평가 및 환류

○ **(평가) '27~'29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실시

- **수급자 실태조사** 및 **급여 적정성 평가** 실시
-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시행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 **성과목표 달성 여부, 과제별 추진실적 등 점검**

○ **(환류)**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성과평가를 토대로 개선 사항을 포함한 **제5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30~'32) 수립·발표**